

대외 비

중소기업범위 개편을 위한

관계회사제도 도입방안 및 기대효과

2008. 7



제 출 문

중소기업청장 귀하

본 보고서를 중소기업청이 기업은행에 연구 의뢰한 『관계회사제도 도입방안 및 기대효과』의 최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08. 7

기업은행장 尹 庸 老

연구참여자

- 연구책임자 : 이형열 팀장
- 연구수행자 : 심상규 연구위원

< 연구목차 >

I . 연구배경	1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흐름도	
II . 국내 대기업의 자회사 보유현황	4
1. 자회사의 조작적 정의	
2. 대기업 범위와 기업 수	
3. 대기업 자회사의 추적	
4. 대기업의 자회사 보유현황	
III . 대기업 자회사의 중소기업시장 진입 현황	16
1. 정부조달시장 참여현황	
2. 정책자금시장 참여현황	
IV . 현행 중소기업범위 기준의 타당성 검증	20
1.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나목	
2. 중소기업 유예기간 활용	
V . 관계회사제도 도입의 효과 분석	25
1. 관계회사제도의 개념	
2. 관계회사제도 도입효과의 민감도 분석	
3. 소 결론	

VI. 중소기업범위 관련 정책제언 50

1.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나목에 대한 입장
2. 중소기업 유예기간제도에 대한 입장
3. 관계회사제도 도입에 대한 입장

[첨부] 54

1. 대기업의 업종별 지분비율 기준 자회사 분포(국내법인)
2. 대기업의 업종별 지분비율 기준 자회사 분포(해외법인)
3. 자회사 소속시장별 관계회사제도 도입 전·후의 대기업 수 비교(1)
4. 자회사 소속시장별 관계회사제도 도입 전·후의 대기업 수 비교(2)
5. 자회사 소속시장별 관계회사제도 도입 전·후의 대기업 수 비교(3)
6. 자회사 소속시장별 관계회사제도 도입 전·후의 대기업 수 비교(4)

[부 록]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소속기업명단
2. 국내 대기업의 관계회사 보유현황
3. 정책자금 조달기업 및 금액
4. 유예기간제도 분석자료
5. 모기업과 자회사의 중소기업여부 판정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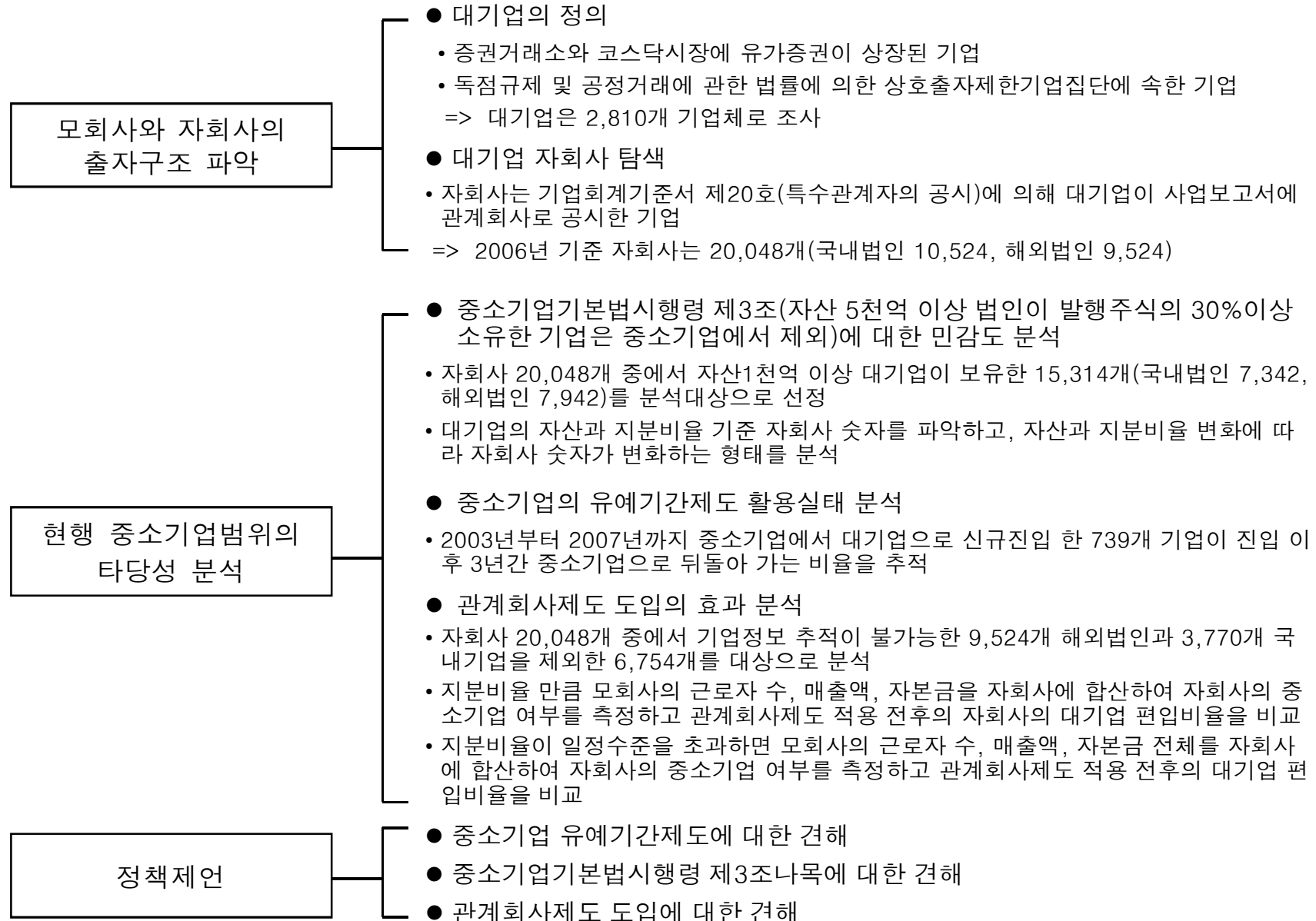
I. 연구배경

1. 연구의 목적

-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공정경쟁을 통한 자주적인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나아가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해 중소기업기본법을 제정하여 운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와 동법시행령 제3조는 중소기업범위를 규정함으로써 개별기업의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음
 - 법령은 업종특성에 따라 상시 근로자수와 자본금 및 매출액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을 판단하는 양적 기준(시행령 제2조1항의 별표1 참조)을 마련
 - * 상시 근로자수가 1천명 이상이거나 전년도 자산총액이 5천억을 초과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에서 제외하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음
 - 시행령 제3조2항은 복잡한 기업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전년도 자산총액이 5천억을 초과하는 법인이 발행 주식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중소기업에서 제외하는 질적 기준을 시행
- 치밀한 법률제정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의 자회사가 정부조달시장에 참여하고 정책자금을 조달해 감으로써 소규모 중소기업의 경영애로를 가중시킨다는 민원이 제기
 - 실제로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의 자회사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들이 2006년에 정부조달시장에서 00개 기업이 000억 원을 조달하였고, 정책자금도 814개 기업체가 1조8,400억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조사됨
 - 이와 같이 대기업의 직접지원을 받는 자회사가 정부조달시장이나 정책자금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원인은 중소기업기본법의 양적 기준보다는 질적 기준의 허점으로 인해 발생
 - 자산 5천억 이상 기업들은 국내에 4,031개의 자회사를 가지고 있지만 지분비율이 30%를 초과하는 자회사는 782개 업체에 불과하여 대기업의 직접지원을 받는 3,249개가 관련규정에서 벗어나고 있어 해당기업들이 중소기업시장 참여가 가능

-
- 비단 중소기업범위와 관련된 문제는 대기업 자회사의 시장참여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에 진입한 기업들의 유예기간제도 악용과 자산이 5천억 미만이면서 대기업에 버금가는 경영능력을 가진 기업들이 시장에 참여하는 것도 또 다른 문제로 지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3항은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년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유예기간제도를 시행
 - 중소기업범위를 벗어난 기업들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누리기 위해 유예기간 동안 회사의 분할이나 양적 기준의 적용요소의 인위적인 조정을 통해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함으로써 시장에 참여한다는 불만이 중소기업들로부터 제기
 - * 현재 기준은 대기업 진입기업이 관련규정을 악용하면 영원히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허점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1의 나항은 전년도 자산총액이 5천억 이상인 경우 중소기업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경영능력이 대기업에 버금가는 5천억 이하 기업들이 양적 기준을 충족하면 얼마든지 중소기업시장의 참여가 가능
 - 미국과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우리나라가 겪는 동일한 문제점에 직면하게 되자 그 개선방안으로 관계회사제도 시행을 통해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관계회사제도는 모기업의 출자지분 만큼 모기업의 자원(상시 근로자수와 매출액 및 자본금)을 자회사 자원에 합산하여 자회사의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하는 시스템
 - 본 연구는 선진국이 채택하고 있는 관계회사제도를 국내기업에 적용할 경우 발생하게 될 효과를 진단함으로써 제도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함
 - 또 다른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유예기간제도와 중소기업 제외기준인 자산총액 5천억 이상의 합리성에 대한 검토도 추가적으로 진행함
-

2. 연구의 흐름도



II. 국내 대기업의 자회사 보유 현황

1. 자회사의 조작적 정의

□ 증권거래법에 의한 관계회사를 자회사로 정의

- 증권거래법 제186조의2와 동법시행령 83조의3은 주권상장법인과 코스닥상장법인은 사업보고서에 관계회사 현황을 기재하도록 명시
- 관계회사는 기업회계기준 제10조제2호의 관계회사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를 의미함

기업회계기준 제10조제2호(기업회계기준서 제20호 특수관계자의 공시로 대체)

관계회사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기업을 말한다

- ㉠ 회사간에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의 100분의 2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관계
- ㉡ 2 이상의 회사가 동일인에 의하여 각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
- ㉢ 위 ㉠ 또는 ㉡ 이외에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지배하고 있는 관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계열회사는 2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 이들 회사는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라 한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기업집단의 범위) >

1.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하여 당해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회사
 -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혈족(친척)
 - ㉡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합하여 총출연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한 경우로서 최다출연자가 되거나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 중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및 단체
 - ㉢ 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관련자를 통하여 임원의 구성이나 사업운용 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
 - ㉣ 동일인이 이호 또는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

2. 대기업 범위와 기업 수

□ 법률상(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와 동법시행령 제3조) 대기업은 아래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정의

- ① 주된 사업의 업종과 상시근로자 수, 자본금 및 매출액 규모가 별표1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 단, 근로자수가 1천명 이상이거나 자산총액이 5천억 이상인 기업은 제외
- 자산총액 5천억 이상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지 않는 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

□ 본 연구는 자회사의 포괄적 분석을 위해 다음 요건 중에서 한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규정

-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 ② 증권거래법에 의해 유가증권이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기업
- ③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해 자산이 5천억 이상인 기업

□ 요건을 충족하는 국내 대기업은 2,810개로 파악됨

-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은 한국신용평가(주)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인 KisValueII에서 추출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규모기업집단정보공개시스템(오프니) 공개자료 활용

<표 2-1> 국내 대기업 현황

2006.12 현재

구 분	거래소	코스닥	등록	외 감	비 외 감	소 계
상호출자제한기업	168	43	139	462	305	1,117
비 출자제한기업	592	986	46	69	0	1,693
소 계	760	1,029	185	531	305	2,810

- 대기업으로 분류된 기업 중에서 1,117개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해 전체 기업의 39.8%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업형태로는 코스닥시장의 상장기업이 1,029개로 36.7%를 점유
- 836개 외감이하 기업이 포함된 것은 상당수 대기업이 기업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본 연구가 대기업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줌

3. 대기업 자회사의 추적

- 대기업 자회사는 2절의 자회사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손자회사는 대기업 자회사가 다시 출자한 기업으로 정의함
- 자회사는 2,810개 대기업이 『사업보고서』에 공시한 관계회사를 대상으로 기업리스트를 작성한 결과 20,048(국내법인 10,524, 해외법인 9,524)개로 파악됨(표2-2 참조)
 - 관계회사제도 타당성 분석을 위해 필요한 개별기업의 업종, 매출액, 자본금 및 근로자수 정보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위해 식별된 10,524개 국내법인을 대상으로 사업자번호를 검색하여 6,754개를 찾아냄
 - * 사업자번호 검색은 한국신용평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및 한국기업데이터(www.cretopfn.co.kr) 등 3개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교차방식으로 진행
 - 9,524개의 해외법인과 사업자번호 식별이 불가능한 3,770개 국내법인은 업종, 근로자수, 매출액 및 자본금에 관한 정보획득이 불가능하여 관계회사제도 분석에서 제외
- 손자회사는 사업보고서에 공시되지 않는 관계로 식별이 불가능 하였음
=> 간접적인 방법으로 추적을 시도하였지만 식별된 기업수가 적고 신뢰성이 낮아 이후 분석에서 제외
 - 10,524개 국내법인 자회사의 주요주주와 한국기업데이터의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250,000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기업명, 경영자 이름 및 설립일자 등의 기준으로 합체하는 방법을 사용
 - 그 결과 3,800개 기업이 합체되었지만 다수의 동명이사 기업체가 상당수 존재하는 관계로 합체된 기업이 실제출자회사가 아닌 경우가 상당수 발견됨

4. 대기업의 자회사 보유현황

1) 대기업이 보유한 자회사 수 기준

가. 모기업의 소속시장별 분류

- 대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의 분류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시장에서 유가증권이 거래되고 있는 기업, 금융감독원 등록기업 및 전년도 자산총액이 70억 이상인 외부감사대상 법인으로 정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분류된 기업도 대기업에 포함
- 2006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금호아시아나 등 59개 그룹이 지정되어 있고 집단에 속한 기업 수는 1,117개 => 그 중에서 462개 기업은 신규설립 또는 정보의 미 공시로 식별이 곤란하여 제외(부록1.xls 참조)

<표 2-2> 대기업의 자회사 보유현황

시장구분	모회사 현황				자회사 보유현황			
	기업 수 (A)	자회사 미보유 기업	자회사 보유기업 (B)	자회사 보유비율 (B/A)	국내	해외	소계(C)	업체당 보유 기업 수(C/B)
거래소기업	760	130	630	82.9	7,111	7,916	15,027	23.9
코스닥기업	1,029	279	750	72.9	3,404	1,598	5,002	6.7
등록 기업	185	185	0	0.0				0
외감 기업	836	832	4	0.5	9	10	19	4.8
전 체	2,810	1,426	1,384	49.3	10,524	9,524	20,048	14.5

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표본은 시장구분 기준에 따라 재 분류하여 표시함

- 분류기준에 따른 대기업은 2,810개 이며 그들이 보유한 자회사는 20,048개 임(부록2.xls 참조)

- 자회사 보유 대기업은 1,384개로 49.3%를 이르고 있으며, 거래소기업과 코스닥기업이 대부분을 보유
- 자회사를 지역별로 보면 국내기업은 10,524개로 52.5%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외기업도 9,524개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

<표 2-3> 대기업을 업종별 자회사 보유현황

업종 코드	업종명	모회사			자회사			업체당 보유기업
		기업 수	자회사 보유기업	자회사 보유비율	국내	해외	소계	
A	농업임업	5	2	40.0	4	4	8	4.0
B	어업	8	6	75.0	31	9	40	6.7
C	광업	41	2	4.9	8		8	4.0
D15	음 식 료	82	53	64.6	505	210	715	13.5
D16	담배제조	1	1	100.0	7		7	7.0
D17	섬유제품	23	16	69.6	93	17	110	6.9
D18	봉제의복	37	31	83.8	220	318	538	17.4
D19	가죽가방	8	6	75.0	54	29	83	13.8
D20	목재나무	4	4	100.0	23	9	32	8.0
D21	펄프종이	35	28	80.0	151	23	174	6.2
D22	출판인쇄	23	18	78.3	235	73	308	17.1
D23	코 크 스	9	2	22.2	75	95	170	85.0
D24	화 합 물	210	125	59.5	1,217	1,350	2,567	20.5
D25	고 무	42	32	76.2	138	86	224	7.0
D26	비 금 속	42	31	73.8	214	77	291	9.4
D27	1차 금속	89	56	62.9	467	219	686	12.3
D28	조립금속	43	29	67.4	115	43	158	5.4
D29	기타기계	144	90	62.5	338	178	516	5.7
D30	컴 퓨 터	36	22	61.1	71	34	105	4.8
D31	기타전기	59	46	78.0	259	118	377	8.2
D32	전자부품	294	210	71.4	871	1,610	2,481	11.8
D33	의료정밀	46	31	67.4	139	296	435	14.0
D34	자 동 차	80	54	67.5	377	303	680	12.6
D35	운송장비	21	9	42.9	99	312	411	45.7
D36	가구제조	19	12	68.8	46	16	62	5.0
E	전기가스	45	11	24.4	173	37	210	19.1
F	건 설 업	109	50	45.9	486	153	639	12.8
G	도매소매	212	96	45.3	1,083	1,110	2,193	22.8
H	숙박음식	50	2	4.0	16	2	18	9.0
I	운 수 업	89	27	30.3	283	157	440	16.3
J	통 신 업	103	15	14.6	200	373	573	38.2
K	금융보험	196	66	33.7	658	572	1,230	18.6
L	부 동 산	103	2	1.9	4		4	2.0
M	사업서비스	311	161	51.8	1,421	1,344	2,765	17.2
N	공공행정	24						
O	교육서비스	10	5	50.0	86	254	340	68.0
P	보건복지	2						
Q	오락문화	127	30	23.6	345	93	438	14.6
R	공공수리	24	3	12.5	12		12	4.0
S	가사서비스	4						
합 계		2,810	1,384	49.3	10,524	9,524	20,048	14.5

나. 모기업의 업종별 분류

□ 대기업을 자회사 보유현황은 업종별로 차이가 존재

○ 건설업이나 도·소매업에 비해 제조업 기업들이 자회사 보유에 적극적인 모습

- 전체기업의 자회사를 보유한 기업체 비율은 50% 수준이지만 대부분 제조업종은 60%를 초과
- 화합물(D24), 전자부품(D32) 업종의 자회사 보유비중이 매우 높는데, 이는 삼성정밀화학 과 LG디스플레이 등의 다국적기업이 다른 업종에 비해 많아서 발생한 현상

○ 업체당 자회사 보유기업 수는 14.5개로 조사되었으며 기업 수는 업종별로 차이가 발생

- 코크스(D23) 업종은 업체당 85개의 자회사를 보유하지만, 종이펄프와 가구제조 등의 업종은 10개 이하

다. 모기업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여부에 따른 분류

- 일반 대기업에 비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들은 관계회사를 보유한 기업 수는 적지만 기업당 보유한 관계회사 수는 월등히 많음
- 일반대기업의 68.5%는 관계회사를 보유하고 있지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비율은 18.8%로 대조를 보이고 있음

<표 2-4>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의 자회사 보유현황

기업구분	모회사 현황				자회사 보유현황			
	기업 수 (A)	자회사 미보유기업	자회사 보유기업(B)	자회사보유 비율(B/A)	국내	해외	소계(C)	업체당 보유 기업 수(C/B)
상호출자제한집단	1,087	883	204	18.8	5,167	6,707	11,874	58.2
일반 대기업	1,723	543	1,180	68.5	5,357	2,817	8,174	6.9
계	2,810	1,426	1,384	49.3	10,524	9,524	20,048	14.5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업체당 관계회사 수는 58.2개로 일반대기업의 6.9개 보다 8배 이상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음
- 국내 관계회사의 경우 일반대기업은 업체당 평균 4.5개를 소유하고 있지만,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은 평균 25.3개를 가지고 있어 차이를 보임
- 하지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소유한 해외관계회사는 업체당 32.9개에 달하고 있지만 일반대기업은 2.4개에 머물고 있어 전자에서 월등하게 높음
- 국내관계회사 수가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해외관계기업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기업규모를 활용하여 해외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다는 증거

2) 대기업의 출자지분 기준

가. 모기업의 소속시장별 분류

- 대기업은 적은 지분으로 자회사를 지배하고 있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2항의 별표2 기준은 소규모 자회사를 대기업으로 분류하는데 큰 성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
- 10,524개의 자회사 중에서 현행 기준(지분비율 30%이상)을 충족하는 기업은 2,568개에 불과하여 전체 자회사의 75.6%가 해당기준에서 벗어나고 있음
 - 단, 모기업 기준이 자산 5천억 이상이 아닌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이기 때문에 관련제도가 실효성이 낮다고 단정하는 것은 곤란

<표 2-5> 모기업의 출자지분 기준 자회사 보유현황_국내법인

지분 비율	외감 기업	거래소 기업				코스닥 기업				소계			
		구 간		누 적		구 간		누 적		구 간		누 적	
		기업	비율	기업	비율	기업	비율	기업	비율	기업	비율	기업	비율
0	2	4,865	68.4	4,865	68.4	2,067	60.7	2,067	60.7	6,934	65.9	6,934	65.9
1~5	0	183	2.6	5,048	71.0	38	1.1	2,105	61.8	221	2.1	7,155	68.0
6~10	0	126	1.8	5,174	72.8	34	1.0	2,139	62.8	160	1.5	7,315	69.5
11~15	0	71	1.0	5,245	73.8	29	0.9	2,168	63.7	100	1.0	7,415	70.5
16~20	0	121	1.7	5,366	75.5	52	1.5	2,220	65.2	173	1.6	7,588	72.1
21~25	0	108	1.5	5,474	77.0	62	1.8	2,282	67.0	170	1.6	7,758	73.7
26~30	1	121	1.7	5,595	78.7	76	2.2	2,358	69.3	198	1.9	7,956	75.6
31~35	0	85	1.2	5,680	79.9	65	1.9	2,423	71.2	150	1.4	8,106	77.0
36~40	0	111	1.6	5,791	81.4	85	2.5	2,508	73.7	196	1.9	8,302	78.9
41~45	0	82	1.2	5,873	82.6	42	1.2	2,550	74.9	124	1.2	8,426	80.1
46~50	0	207	2.9	6,080	85.5	99	2.9	2,649	77.8	306	2.9	8,732	83.0
51~55	1	114	1.6	6,194	87.1	79	2.3	2,728	80.1	195	1.9	8,927	84.8
56~60	1	89	1.3	6,283	88.4	69	2.0	2,797	82.2	159	1.5	9,086	86.3
61~65	0	42	0.6	6,325	89.0	32	0.9	2,829	83.1	74	0.7	9,160	87.0
66~70	0	65	0.9	6,390	89.9	66	1.9	2,895	85.0	131	1.2	9,291	88.3
71~75	0	41	0.6	6,431	90.5	26	0.8	2,921	85.8	67	0.6	9,358	88.9
76~80	1	45	0.6	6,477	91.1	31	0.9	2,952	86.7	77	0.7	9,435	89.7
81~85	0	29	0.4	6,505	91.5	14	0.4	2,966	87.1	43	0.4	9,478	90.1
86~90	0	48	0.7	6,553	92.2	35	1.0	3,001	88.2	83	0.8	9,561	90.8
91~95	0	47	0.7	6,600	92.8	27	0.8	3,028	89.0	74	0.7	9,635	91.6
96이상	3	510	7.2	7,111	100.0	376	11.0	3,404	100.0	889	8.4	10,524	100.0

□ 대기업의 해외 자회사에 대한 지분비율은 양극화 현상을 보임

- 국내 자회사와 마찬가지로 0% 지분으로 지배하는 자회사가 9,524개 중에서 7,475개(78.5%)에 달하고 있지만, 96% 이상 지분을 소유한 자회사도 1,301개로 전체표본의 13.7%를 차지
 - 대기업이 높은 지분소유로 다수의 해외 자회사를 소유하는 것은 삼성과 엘지 등 다국적 기업들이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해 진출국가 기업과의 합작투자보다는 단독투자를 선호하기 때문으로 풀이
- 이 결과는 관계회사제도 도입에서 지분비율이 일정수준을 초과하면 모기업의 모든 자원을 자회사에 합산하는 방식보다 지분비율에 비례한 합산방법이 효과적임을 보여 줌

<표 2-6> 모기업의 출자지분 기준 자회사 보유현황_해외법인

지분비율	외감 기업	거래소 기업				코스닥 기업				소계			
		구 간		누 적		구 간		누 적		구 간		누 적	
		기업	비율	기업	비율	기업	비율	기업	비율	기업	비율	기업	비율
0	0	6,592	83.3	6,592	83.3	883	55.3	883	55.3	7,475	78.5	7,475	78.5
1~5	0	17	0.2	6,609	83.5	2	0.1	885	55.4	19	0.2	7,494	78.7
6~10	0	9	0.1	6,618	83.6	3	0.2	888	55.6	12	0.1	7,506	78.8
11~15	0	10	0.1	6,628	83.7	3	0.2	891	55.8	13	0.1	7,519	78.9
16~20	0	15	0.2	6,643	83.9	7	0.4	898	56.2	22	0.2	7,541	79.2
21~25	0	21	0.3	6,664	84.2	6	0.4	904	56.6	27	0.3	7,568	79.5
26~30	0	18	0.2	6,682	84.4	8	0.5	912	57.1	26	0.3	7,594	79.7
31~35	1	23	0.3	6,705	84.7	12	0.8	924	57.8	36	0.4	7,630	80.1
36~40	0	40	0.5	6,745	85.2	10	0.6	934	58.4	50	0.5	7,680	80.6
41~45	0	25	0.3	6,770	85.5	6	0.4	940	58.8	31	0.3	7,711	81.0
46~50	1	109	1.4	6,879	86.9	44	2.8	984	61.6	154	1.6	7,865	82.6
51~55	1	43	0.5	6,922	87.4	15	0.9	999	62.5	59	0.6	7,924	83.2
56~60	0	43	0.5	6,965	88.0	11	0.7	1,010	63.2	54	0.6	7,978	83.8
61~65	0	10	0.1	6,975	88.1	14	0.9	1,024	64.1	24	0.3	8,002	84.0
66~70	1	36	0.5	7,011	88.6	15	0.9	1,039	65.0	52	0.5	8,054	84.6
71~75	0	21	0.3	7,032	88.8	12	0.8	1,051	65.8	33	0.3	8,087	84.9
76~80	0	21	0.3	7,053	89.1	10	0.6	1,061	66.4	31	0.3	8,118	85.2
81~85	0	15	0.2	7,068	89.3	10	0.6	1,071	67.0	25	0.3	8,143	85.5
86~90	0	27	0.3	7,095	89.6	14	0.9	1,085	67.9	41	0.4	8,184	85.9
91~95	0	26	0.3	7,121	90.0	13	0.8	1,098	68.7	39	0.4	8,223	86.3
96이상	6	795	10.0	7,916	100.0	500	31.3	1,598	100.0	1,301	13.7	9,524	100.0

나. 모기업의 업종별 분류

□ 대기기업의 업종별 지분비율기준 자회사 보유현황은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음

-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경우 0% 지분으로 통제하는 자회사가 전체 자회사의 68.4%와 65.9%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분비율 96%이상 자회사도 9.6%와 8.5%로 차이가 크지 않음(첨부1 참조)
- 이는 관계회사제도 운영과정에서 모기업 자원의 합산기준 지분비율을 업종별로 차별화 해도 실효성이 낮다는 결과를 보여줌

<표 2-7> 모기업의 업종별 자회사 보유현황_국내법인

지분	제조업				비제조업				소 계			
	구 간		누 적		구 간		누 적		구 간		누 적	
	기업	비율	기업	비율	기업	비율	기업	비율	기업	비율	기업	비율
0	3,643	63.8	3,643	63.8	3,283	68.4	3,283	68.4	6,926	65.9	6,926	65.9
01~05	132	2.3	3,775	66.1	89	1.9	3,372	70.2	221	2.1	7,147	68.0
06~10	103	1.8	3,878	67.9	57	1.2	3,429	71.4	160	1.5	7,307	69.5
11~15	59	1.0	3,937	68.9	41	0.9	3,470	72.3	100	1.0	7,407	70.4
16~20	117	2.0	4,054	71.0	56	1.2	3,526	73.4	173	1.6	7,580	72.1
21~25	118	2.1	4,172	73.0	52	1.1	3,578	74.5	170	1.6	7,750	73.7
26~30	137	2.4	4,309	75.4	61	1.3	3,639	75.8	198	1.9	7,948	75.6
31~35	89	1.6	4,398	77.0	61	1.3	3,700	77.1	150	1.4	8,098	77.0
36~40	113	2.0	4,511	79.0	83	1.7	3,783	78.8	196	1.9	8,294	78.9
41~45	83	1.5	4,594	80.4	41	0.9	3,824	79.6	124	1.2	8,418	80.1
46~50	181	3.2	4,775	83.6	125	2.6	3,949	82.2	306	2.9	8,724	83.0
51~55	95	1.7	4,870	85.2	99	2.1	4,048	84.3	194	1.8	8,918	84.8
56~60	100	1.8	4,970	87.0	59	1.2	4,107	85.5	159	1.5	9,077	86.3
61~65	44	0.8	5,014	87.8	30	0.6	4,137	86.2	74	0.7	9,151	87.0
66~70	64	1.1	5,078	88.9	67	1.4	4,204	87.5	131	1.2	9,282	88.3
71~75	40	0.7	5,118	89.6	27	0.6	4,231	88.1	67	0.6	9,349	88.9
76~80	47	0.8	5,165	90.4	30	0.6	4,261	88.7	77	0.7	9,426	89.6
81~85	26	0.5	5,191	90.9	17	0.4	4,278	89.1	43	0.4	9,469	90.1
86~90	49	0.9	5,240	91.7	34	0.7	4,312	89.8	83	0.8	9,552	90.8
91~95	43	0.8	5,283	92.5	31	0.6	4,343	90.4	74	0.7	9,626	91.5
96이상	430	7.5	5,713	100.0	459	9.6	4,802	100.0	889	8.5	10,515	100.0
소 계	5,713	100.0			4,802	100			10,515	100.0		

□ 대기기업의 해외 자회사에 대한 출자지분은 국내 자회사와 다소 차이를 보임

○ 출자지분 0%로 통제하는 자회사는 제조업의 경우 전체표본의 73.1%이고 비제조업은 85.6%를 나타내어 후자의 업종에서 낮았지만, 96% 이상 지분을 소유한 자회사는 17.4%와 8.7%로 비제조업이 두 배 이상 많음(첨부2 참조)

- 제조기업이 높은 지분으로 통제하는 자회사 수가 많은 것은 공장의 현지설립에 의한 원가절감 등의 본질적인 요인도 있지만, 독자적인 글로벌 역량을 갖춘 대다수 대기기업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도 또 다른 원인으로 작용

<표 2-8> 모기업의 업종별 자회사 보유현황_해외법인

업종	제조업				비제조업				소계			
	구간		누계		구간		누계		구간		누계	
	기업	비율	기업	비율	기업	비율	기업	비율	기업	비율	기업	비율
0	3,959	73.1	3,959	73.1	3,516	85.6	3,516	85.6	7,475	78.5	7,475	78.5
01~05	16	0.3	3,975	73.4	3	0.1	3,519	85.7	19	0.2	7,494	78.7
06~10	8	0.1	3,983	73.5	4	0.1	3,523	85.8	12	0.1	7,506	78.8
11~15	12	0.2	3,995	73.8	1	0.0	3,524	85.8	13	0.1	7,519	78.9
16~20	14	0.3	4,009	74.0	8	0.2	3,532	86.0	22	0.2	7,541	79.2
21~25	15	0.3	4,024	74.3	12	0.3	3,544	86.3	27	0.3	7,568	79.5
26~30	17	0.3	4,041	74.6	9	0.2	3,553	86.5	26	0.3	7,594	79.7
31~35	25	0.5	4,066	75.1	11	0.3	3,564	86.8	36	0.4	7,630	80.1
36~40	36	0.7	4,102	75.7	14	0.3	3,578	87.1	50	0.5	7,680	80.6
41~45	18	0.3	4,120	76.1	13	0.3	3,591	87.4	31	0.3	7,711	81.0
46~50	95	1.8	4,215	77.8	59	1.4	3,650	88.9	154	1.6	7,865	82.6
51~55	39	0.7	4,254	78.5	20	0.5	3,670	89.3	59	0.6	7,924	83.2
56~60	43	0.8	4,297	79.3	11	0.3	3,681	89.6	54	0.6	7,978	83.8
61~65	20	0.4	4,317	79.7	4	0.1	3,685	89.7	24	0.3	8,002	84.0
66~70	34	0.6	4,351	80.3	18	0.4	3,703	90.1	52	0.5	8,054	84.6
71~75	26	0.5	4,377	80.8	7	0.2	3,710	90.3	33	0.3	8,087	84.9
76~80	19	0.4	4,396	81.2	12	0.3	3,722	90.6	31	0.3	8,118	85.2
81~85	17	0.3	4,413	81.5	8	0.2	3,730	90.8	25	0.3	8,143	85.5
86~90	29	0.5	4,442	82.0	12	0.3	3,742	91.1	41	0.4	8,184	85.9
91~95	30	0.6	4,472	82.6	9	0.2	3,751	91.3	39	0.4	8,223	86.3
96이상	944	17.4	5,416	100.0	357	8.7	4,108	100.0	1,301	13.7	9,524	100.0
소계	5,416	100.0			4,108	100.0			9,524	100.0		

다. 모기업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여부에 따른 분류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모기업은 0% 지분으로 통제하는 자회사가 압도적 다수를 차지

○ 11,876개 자회사 중에서 모기업이 0% 지분으로 통제하는 자회사 수는 10,384개로 87.4%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 현상은 국내 자회사보다는 해외 자회사에서 심화

- 이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업은 공정거래법에 의해 상호출자가 제한되어 있어 예상할 수 있는 결과이며, 동시에 관계회사제도 도입에서 이들에 대한 별도의 법안마련이 필요함을 의미

<표 2-9>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모기업의 자회사 보유현황

지분 비율	국내법인				해외법인				소 계			
	구간		누적		구간		누적		구간		누적	
	기업	비율	기업	비율	기업	비율	기업	비율	기업	비율	기업	비율
0	4,198	81.2	4,198	81.2	6186	92.2	6,186	92.2	10,384	87.4	10,384	87.4
01~05	116	2.2	4,314	83.5	9	0.1	6,195	92.3	125	1.1	10,509	88.5
6~10	70	1.4	4,384	84.8	7	0.1	6,202	92.4	77	0.6	10,586	89.1
11~15	46	0.9	4,430	85.7	8	0.1	6,210	92.6	54	0.5	10,640	89.6
16~20	53	1.0	4,483	86.8	6	0.1	6,216	92.7	59	0.5	10,699	90.1
21~25	47	0.9	4,530	87.7	9	0.1	6,225	92.8	56	0.5	10,755	90.6
26~30	50	1.0	4,580	88.6	5	0.1	6,230	92.9	55	0.5	10,810	91.0
31~35	40	0.8	4,620	89.4	8	0.1	6,238	93.0	48	0.4	10,858	91.4
36~40	43	0.8	4,663	90.2	20	0.3	6,258	93.3	63	0.5	10,921	92.0
41~45	31	0.6	4,694	90.8	5	0.1	6,263	93.4	36	0.3	10,957	92.3
46~50	77	1.5	4,771	92.3	36	0.5	6,299	93.9	113	1.0	11,070	93.2
51~55	52	1.0	4,823	93.3	14	0.2	6,313	94.1	66	0.6	11,136	93.8
56~60	28	0.5	4,851	93.9	21	0.3	6,334	94.4	49	0.4	11,185	94.2
61~65	15	0.3	4,866	94.2	3	0.0	6,337	94.5	18	0.2	11,203	94.3
66~70	26	0.5	4,892	94.7	12	0.2	6,349	94.6	38	0.3	11,241	94.7
71~75	18	0.3	4,910	95.0	7	0.1	6,356	94.7	25	0.2	11,266	94.9
76~80	11	0.2	4,921	95.2	10	0.1	6,366	94.9	21	0.2	11,287	95.0
81~85	13	0.3	4,934	95.5	8	0.1	6,374	95.0	21	0.2	11,308	95.2
86~90	18	0.3	4,952	95.8	8	0.1	6,382	95.1	26	0.2	11,334	95.4
91~95	21	0.4	4,973	96.2	11	0.2	6,393	95.3	32	0.3	11,366	95.7
96이상	194	3.8	5,167	100.0	316	4.7	6,709	100.0	510	4.3	11,876	100.0
소 계	5,167	100			6,709	100.0			11,876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모기업에 비해 일반집단의 모기업은 다량의 지분소유로 통제하는 자회사 수가 월등히 많음

○ 0% 지분으로 통제하는 자회사 수는 49.3%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87.4%보다 월등하게 낮고, 지분비율 1~95%로 통제하는 자회사 수도 상대적으로 높음

- 일반집단 모기업이 많은 지분소유를 통해 자회사를 통제하는 것은 거대한 자금조달의 한계와 더불어, 독자적인 글로벌 경영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현지법인과 합작투자를 선호하기 때문으로 풀이

<표 2-10> 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모기업의 자회사 보유현황

지분 비율	국내법인				해외법인				소 계			
	구간		누적		구간		누적		구간		누적	
	기업	비율	기업	비율	기업	비율	기업	비율	기업	비율	기업	비율
0	2,736	51.1	2,736	51.1	1,289	45.8	1,289	45.8	4,025	49.3	4,025	49.3
1~5	105	2.0	2,841	53.0	10	0.4	1,299	46.1	115	1.4	4,140	50.7
6~10	90	1.7	2,931	54.7	5	0.2	1,304	46.3	95	1.2	4,235	51.8
11~15	54	1.0	2,985	55.7	5	0.2	1,309	46.5	59	0.7	4,294	52.6
16~20	120	2.2	3,105	58.0	16	0.6	1,325	47.1	136	1.7	4,430	54.2
21~25	123	2.3	3,228	60.3	18	0.6	1,343	47.7	141	1.7	4,571	55.9
26~30	148	2.8	3,376	63.0	21	0.7	1,364	48.5	169	2.1	4,740	58.0
31~35	110	2.1	3,486	65.1	28	1.0	1,392	49.4	138	1.7	4,878	59.7
36~40	153	2.9	3,639	67.9	30	1.1	1,422	50.5	183	2.2	5,061	61.9
41~45	93	1.7	3,732	69.7	26	0.9	1,448	51.4	119	1.5	5,180	63.4
46~50	229	4.3	3,961	74.0	118	4.2	1,566	55.6	347	4.2	5,527	67.6
51~55	142	2.7	4,103	76.6	45	1.6	1,611	57.2	187	2.3	5,714	69.9
56~60	131	2.4	4,234	79.1	33	1.2	1,644	58.4	164	2.0	5,878	71.9
61~65	59	1.1	4,293	80.2	21	0.7	1,665	59.1	80	1.0	5,958	72.9
66~70	105	2.0	4,398	82.1	40	1.4	1,705	60.6	145	1.8	6,103	74.7
71~75	49	0.9	4,447	83.0	26	0.9	1,731	61.5	75	0.9	6,178	75.6
76~80	66	1.2	4,513	84.3	21	0.7	1,752	62.2	87	1.1	6,265	76.7
81~85	30	0.6	4,543	84.8	17	0.6	1,769	62.8	47	0.6	6,312	77.2
86~90	65	1.2	4,608	86.0	33	1.2	1,802	64.0	98	1.2	6,410	78.4
91~95	53	1.0	4,661	87.0	28	1.0	1,830	65.0	81	1.0	6,491	79.4
96이상	695	13.0	5,356	100.0	985	35.0	2,815	100.0	1,680	20.6	8,171	100.0
소 계	5,356	100.0			2,815	100.0			8,171	100.0		

III. 대기업 자회사의 중소기업시장 진입 현황

1. 정부조달시장 참여 현황

1) 기업형태별 조달 기업 수와 조달금액

□ 실제로 대기업 또는 대기업의 관계회사가 정부조달시장에 참여하는 정도를 기업형태별로 분석함

<표 4-0> 시장구분/연도별 대기업 자회사의 정부조달시장 참여현황

(단위: 개, 억원, %)

시장구분	FY2005			FY2006			FY2007		
	기업 수	금액	비율	기업 수	금액	비율	기업 수	금액	비율
증권거래소	130	26,140	67.5	146	25,075	61.6	168	33,679	63.9
코스닥시장	117	1,851	4.8	141	2,324	5.7	159	3,125	5.9
등록기업	42	8,626	22.3	41	10,570	26.0	55	12,939	24.6
외감기업	79	2,002	5.2	105	2,638	6.5	141	2,867	5.4
일반기업	26	94	0.2	29	98	0.2	32	73	0.1
계	394	38,713	100.0	462	40,705	100.0	555	52,683	100.0

주) 자회사가 2006년 기준이기 때문에 통계치는 2006년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해야 함

<표 4-0>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기업 자회사의 정부조달시장 참여현황

(단위: 개, 억원, %)

기업군	FY2005			FY2006			FY2007		
	기업 수	금액	비율	기업 수	금액	비율	기업 수	금액	비율
일반기업	274	10,909	28.2	343	13,084	32.1	408	18,302	34.7
상호출자제한기업	120	27,804	71.8	119	27,621	67.9	147	34,381	65.3
계	394	38,713	100.0	462	40,705	100.0	555	52,683	100.0

주) 자회사가 2006년 기준이기 때문에 통계치는 2006년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해야 함

2) 업종별 기업 수와 조달금액

□ 대기업 또는 대기업의 관계회사가 정부조달시장에 참여하는 정도를 업종별로 분석함

<표 4-0> 대기업 자회사의 업종별 정부조달시장 참여현황 (2006년 기준)

단위: 개, 백만원

업종코드	업종명	기업 수	금액(억원)	비율
B	어업	1	1	0.0
D15	음식료	4	17	0.0
D17	섬유제품	3	102	0.3
D18	봉제의복	3	1	0.0
D20	목재나무	2	10	0.0
D21	펄프종이	3	19	0.0
D22	출판인쇄	7	23	0.1
D24	화학물	40	726	1.8
D25	고무	11	134	0.3
D26	비금속	30	1,193	2.9
D27	1차금속	23	7,311	18.0
D28	조립금속	7	99	0.2
D29	기타기계	36	619	1.5
D30	컴퓨터	13	1,691	4.2
D31	기타전기	25	295	0.7
D32	전자부품	23	7,533	18.5
D33	의료정밀	14	133	0.3
D34	자동차	8	2,185	5.4
D35	운송장비	5	4,260	10.5
D36	가구제조	6	215	0.5

업종코드	업종명	기업 수	금액(억원)	비율
F	건설업	13	119	0.3
G	도매소매	35	1,962	4.8
I	운수업	3	31	0.1
J	통신업	7	1,145	2.8
K	금융보험	15	810	2.0
L	부동산	4	1,707	4.2
M	사업서비스	109	8,241	20.2
N	공공행정	1	0	0.0
O	교육서비스	3	54	0.1
Q	오락문화	4	18	0.0
R	공공수리	4	53	0.1
계		462	40,705	100.0

2. 정책자금시장 참여 현황

1) 기업형태별 조달 기업 수와 조달금액

□ 대기업 자회사의 2006년 기준 정책자금의 조달규모는 1조8,479억원인 것으로 조사

○ 중소기업의 낮은 신용보강을 위해 지원되는 신용(기술신용)보증기금의 공급규모는 1조7천억 원이며, 그 중에서 60.5%인 1조5백억이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에 공급(부록3.xls 참조)

- 이 결과는 해당기관의 자금집행 오류라기 보다는 현행 법률이 유가증권 공개능력이 있는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분류하는 문제점에 기인하는 측면에 높음

<표 3-3> 기업형태별 정책금융 조달 현황

단위: 개, 백만원

기업형태	신용(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합계	
	기업 수	조달금액	비중	기업 수	조달금액	비중	금액	비중
거래소기업	62	214,481	12.3	5	8,003	7.9	222,484	12.0
코스닥기업	326	840,861	48.2	85	47,729	46.9	888,590	48.1
등록기업	60	125,347	7.2	11	1,844	1.8	127,191	6.9
외감기업	225	501,557	28.7	64	36,388	35.7	537,945	29.1
일반기업	141	63,826	3.7	32	7,853	7.7	71,679	3.9
계	814	1,746,072	100.0	197	101,817	100.0	1,847,889	100.0

○ 중소기업에 자금을 직접 공급하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자금지원은 197개 업체에 대해 1천억이 이루어 졌으며, 전체 공급자금의 54.8%인 557억원이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에 지원

- 해당기관들이 중소기업에 지원한 전체 자금에서 대기업 자회사에 공급한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지만 희소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고려할 때 개선이 필요하며 그 개선방안은 중소기업의 범위의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서 해결해야 함

<표 3-4> 업종별 정책자금 조달현황

단위: 개, 백만원

2) 업종별 조달 기업 수와 조달금액

□ 정부의 제조업 중심 중소기업 육성정책에 따라 대부분 정책자금이 제조업 기업에 지원

○ 대기업 자회사에 공급된 1조8천억 중에서 70%가 제조업에 지원되었으며, 그 비중은 신용보증기금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비슷하게 나타남

○ 제조업과 연관성이 높은 사업서비스(M) 업종에도 6.4%가 지원되어 실제 제조업 지원비중은 76.4%에 달함

업종 코드	업종 명	신보(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합계	
		업체	금액	비중	업체	금액	비중	금액	비중
A	농업임업	2	3,565	0.2			0.0	3,565	0.2
B	어업	2	6,680	0.4			0.0	6,680	0.4
C	광업	1	1,820	0.1			0.0	1,820	0.1
D15	음 식 료	25	66,745	3.8	7	5,222	5.1	71,967	3.9
D17	섬유제품	9	21,771	1.2	1	225	0.2	21,996	1.2
D18	봉제의복	13	26,364	1.5	2	592	0.6	26,956	1.5
D19	가죽가방	3	6,217	0.4			0.0	6,217	0.3
D20	목재나무	1	850	0.0			0.0	850	0.0
D21	펄프종이	9	19,295	1.1	2	1,749	1.7	21,044	1.1
D22	출판인쇄	7	3,452	0.2	2	175	0.2	3,627	0.2
D24	화 합 물	51	73,639	4.2	18	9,019	8.9	82,658	4.5
D25	고 무	24	44,575	2.6	11	4,314	4.2	48,889	2.6
D26	비 금 속	10	20,941	1.2	1	175	0.2	21,116	1.1
D27	1차 금속	34	99,118	5.7	6	1,486	1.5	100,604	5.4
D28	조립금속	33	73,475	4.2	9	5,977	5.9	79,452	4.3
D29	기타기계	73	167,515	9.6	19	8,982	8.8	176,497	9.6
D30	컴 퓨 터	14	43,323	2.5	5	2,318	2.3	45,641	2.5
D31	기타전기	29	64,378	3.7	4	2,663	2.6	67,041	3.6
D32	전자부품	148	330,518	18.9	41	14,085	13.8	344,603	18.6
D33	의료정밀	28	51,866	3.0	9	4,234	4.2	56,100	3.0
D34	자 동 차	28	71,710	4.1	12	8,385	8.2	80,095	4.3
D35	운송장비	6	21,902	1.3	1	675	0.7	22,577	1.2
D36	가구제조	8	21,005	1.2	2	538	0.1	21,543	1.1
	제조업	553	1,228,659	70.4	152	70,814	69.2	1,299,473	70.0
F	건 설 업	23	88,527	5.1	1	353	0.3	88,880	4.8
G	도매소매	49	82,297	4.7	2	480	0.5	82,777	4.5
I	운 수 업	10	22,903	1.3			0.0	22,903	1.2
J	통 신 업	2	4,639	0.3			0.0	4,639	0.3
K	금융보험	7	61,721	3.5	17	24,669	24.2	86,390	4.7
L	부 동 산	2	77,000	4.4	1	150	0.1	77,150	4.2
M	사업서비스	98	116,626	6.7	13	1,522	1.5	118,148	6.4
O	교육서비스	1	491	0.0			0.0	491	0.0
Q	오락문화	21	36,187	2.1	2	410	0.4	36,597	2.0
R	공공수리	3	5,143	0.3			0.0	5,143	0.3
	기 타	40	9,814	0.6	9	3,419	3.4	13,233	0.7
	계	814	1,746,072	100.0	197	101,817	100.0	1,847,889	100.0

IV. 현행 중소기업범위 기준의 타당성 검증

1.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나목

- 중소기업의 소유와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제3조제2호)으로 자산총액 5천억 이상의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한 기업은 중소기업에서 제외
-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상장기업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업의 자산규모와 출자지분을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수를 분석
 - 현행 기준의 적용을 받는 자회사는 782개로 전체 자회사의 10.7%에 불과하여 대기업 자회사를 중소기업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목적을 부분적으로 달성하고 있는 상황
 - 지분비율을 현행 30%를 유지하면서 자산규모를 5천억에서 3천억으로 낮추면 201개 자회사가 추가로 대기업에 편입되고, 자산규모의 변동 없이 지분비율을 30%에서 10%로 낮추어도 추가로 201개 자회사가 대기업에 편입되어 유사한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

<표 4-1> 대기업의 자산규모와 출자지분 기준 자회사 수_국내기업

자산(억원)	표본	지분비율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91이상
1000~1500	865	511	40	37	41	39	62	30	14	17	8	66
1500~2000	839	575	21	17	35	22	36	24	15	11	11	72
2000~2500	399	237	18	9	19	15	20	23	16	5	6	31
2500~3000	304	172	10	10	18	12	16	8	5	3	2	48
3000~3500	296	207	11	9	8	6	11	6	8	4	6	20
3500~4000	184	126	3	5	11	6	12	4	4	2	3	8
4000~4500	210	133	5	2	7	4	11	10	6	5		27
4500~5000	214	155	14	5	2	3	5	6	4	3	2	15
5000~5500	159	117	3	6	5	2	4	5	4		5	8
5500~6000	99	59	1	5		4	5	6	1	3	1	14
6000~6500	136	111	2	2	2	2	2	4	1			10
6500~7000	67	43	4	1	3	3	2	1	1			9
7000이상	3,570	2,555	153	90	87	82	108	86	49	36	39	285
소계	7,342	5,001	285	198	238	200	294	213	128	89	83	613

<표 4-2> 자산과 지분 변화에 따른 자회사 수 증감

	10%	20%	30%	40%	50%	60%	70%
3000	1,233	1,108	983	871	711	583	505
	451	326	201	89	-71	-199	-277
3500	1,155	1,039	922	816	667	545	475
	373	257	140	34	-115	-237	-307
4000	1,100	989	883	783	646	528	462
	318	207	101	1	-136	-254	-320
4500	1,028	919	820	724	598	490	430
	246	137	38	-58	-184	-292	-352
5000	983	879	782	689	568	466	410
	201	97	0	-93	-214	-316	-372
5500	944	846	754	663	546	449	397
	162	64	-28	-119	-236	-333	-385
6000	905	812	720	633	521	430	379
	123	30	-62	-149	-261	-352	-403
6500	882	791	701	616	506	419	369
	100	9	-81	-166	-276	-363	-413
7000	862	772	685	603	495	409	360
	80	-10	-97	-179	-287	-373	-422

- 기준을 하향 조정(자산 3천억, 지분비율 10%)해도 대기업에 추가 편입되는 자회사는 451개에 불과하여 독립성 기준의 조정을 통한 대기업 자회사의 중소기업 배제정책은 실효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
- 비록 기준의 하향조정으로 451개의 자회사가 대기업에 편입되지만 이 경우 실제 중소기업 역량을 갖춘 기업들이 중소기업에서 배제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

□ **현행 기준이 해외 자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국내 자회사와 다소 다를 것으로 전망**

- 해외 자회사에 현행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면 7,972개 중에서 634개 자회사가 대기업으로 분류되어 전체 자회사의 7.95%가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정
- 한편 지분비율 기준을 동일하게 유지하고 자산기준을 5천억에서 3천억으로 조정하면 149개 자회사가 추가로 대기업에 편입되지만 자산기준 변화 없이 지분비율을 30%에서 10%로 조정하면 35개만이 대기업에 추가로 편입되는 것으로 분석
- 자산과 지분비율 기준을 3천억과 10%로 동시에 조정하면 191개 자회사가 대기업에 추가로 편입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개정효과는 국내 자회사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

<표 4-3> 대기업의 자산규모와 출자지분 기준 자회사 수_해외기업

자산(억원)	표본	지분비율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000~1500	446	239	4	0	7	5	22	8	2	5	4	150
1500~2000	326	189	1	3	4	5	17	9	2	6	8	82
2000~2500	220	119	2	1	3	1	2	4	4	5	2	77
2500~3000	80	37	1	3	0	0	10	3	3	1	2	20
3000~3500	101	63	0	1	0	3	3	1	1	0	0	29
3500~4000	306	255	1	0	0	2	8	5	2	0	1	32
4000~4500	85	39	0	2	4	3	6	7	1	2	0	21
4500~5000	242	220	0	0	0	1	2	2	1	0	1	15
5000~5500	41	26	0	1	1	2	0	1	0	0	3	7
5500~6000	248	243	0	0	0	0	0	0	0	1	0	4
6000~6500	260	249	1	1	0	0	1	0	1	1	1	5
6500~7000	37	13	0	0	3	1	7	2	0	2	0	9
7000이상	5,580	4,950	15	13	16	30	57	40	25	19	21	394
소계	7,972	6,642	25	25	38	53	135	82	42	42	43	845

<표 4-4> 자산과 지분 변화에 따른 자회사 수 증감

	10%	20%	30%	40%	50%	60%	70%
3000	825	807	783	741	657	599	568
	191	173	149	107	23	-35	-66
3500	787	770	746	707	626	569	539
	153	136	112	73	-8	-65	-95
4000	737	720	696	659	586	534	506
	103	86	62	25	-48	-100	-128
4500	691	676	656	622	555	510	483
	57	42	22	-12	-79	-124	-151
5000	669	654	634	601	536	493	467
	35	20	0	-33	-98	-141	-167
5500	654	640	621	590	525	483	457
	20	6	-13	-44	-109	-151	-177
6000	649	635	616	585	520	478	452
	15	1	-18	-49	-114	-156	-182
6500	639	626	607	576	512	470	445
	5	-8	-27	-58	-122	-164	-189
7000	615	602	586	556	499	459	434
	-19	-32	-48	-78	-135	-175	-200

2. 중소기업 유예기간 활용

-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진입한 후 유예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대기업 지위를 유지하는 기업체는 45.6%에 불과하고, 일부 기업은 해당기간 동안 탈락하였다가 재차 대기업에 진입하고 있어 유예기간제도를 악용하는 기업체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
 - 2007말 현재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을 받고 있는 기업체는 418개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됨(부록4.xls 참조)
 - 2004년 신규로 대기업에 진입한 157개 기업체 중에서 1년 후 대기업 지위를 유지하는 기업체는 116개이며, 3년 후인 2007년에 대기업 유지기업은 74개로 나타나서 유예기간 동안 대기업 지위를 유지하는 기업은 46.5%에 불과함
- 신규 진입한 이후 대기업에서 탈락했다가 2, 3년 후에 재차 대기업에 진입한 기업도 각각 8개 기업체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

<표 4-5> 외부감사이상 기업들의 대기업 유지 현황

신규진입		연도별 유지현황						기간별 유지현황		
		2005		2006		2007		1년 후	2년 후	3년 후
연도	대기업	대기업	유지비율	대기업	유지비율	대기업	유지비율			
2004	159	123	77.4	116(8)	73.0	74(8)	46.5	123	116	74
2005	145			107	73.8	83(6)	57.2	107	83	
2006	185					102	55.1	102		
2007	159					159				
소계						418		332	199	74
유지비율								67.9	65.5	46.5

• 괄호()안의 숫자는 신규로 대기업에 진입했다가 탈락한 이후 재차 대기업에 진입한 기업 수를 의미함

- 2005년 신규 진입한 145개 기업 중에서 1년 후인 2006년에 대기업을 유지하는 기업은 107개, 2년 후인 2007년 대기업을 83개로 대기업 지위를 연속해서 유지하는 비율은 57.2%를 나타내어 전년도 신규 진입한 기업과 유지비율은 다소 차이를 보임

-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신규 진입한 이후 1년과 3년 후에 급격히 대기업에서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음
 - 기간별로 차이가 존재하지만 1년 후 대기업 유지비율은 67.9%로 나타나서 이탈기업이 30%를 초과하고 있고, 3년 후에는 탈락비율이 전년도에 비해 20% 증가하여 대다수 기업들은 신규진입 후 1년과 3년 후에 집중적으로 이탈하는 것으로 나타남
 - 실제 경영능력 부족으로 대기업에서 탈락할 수 있지만 유예기간 동안 50% 이상 기업체가 대기업 지위를 유지하지 못하는 것은 유예기간제도를 악용하는 기업체가 존재한다는 추정이 가능

- 대기업 탈락기업은 제조업보다는 비제조업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발생
 - 2004년에 대기업에 신규 진입한 기업 수는 비제조업에서 월등히 많고, 유예기간 동안 대기업을 유지비율은 제조업이 10% 이상 높게 나타나서 비제조업에서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 4-6> 외부감사이상 기업들의 업종·시장별 대기업 유지 현황 _2004년 신규진입 기업

업종	시장	신규진입	1년 후		2년 후		3년 후	
		대기업	대기업	유지비율	대기업	유지비율	대기업	유지비율
제조업	증권거래소	11	7	63.6	7	63.6	5	45.5
	코스닥시장	4	4	100.0	2	50.0	3	75.0
	등록시장	5	4	80.0	4	80.0	2	40.0
	외부감사	5	4	80.0	4	80.0	4	80.0
	소계	25	19	76.0	17	68.0	14	56.0
비제조업	증권거래소	108	88	81.5	83	76.9	44	40.7
	코스닥시장	6	3	50.0	4	66.7	4	66.7
	등록시장	9	6	66.7	4	44.4	6	66.7
	외부감사	11	7	63.6	8	72.7	6	54.5
	소계	134	104	77.6	99	73.9	60	44.8
합계		159	123	77.4	116	73.0	74	46.5

□ 대기업 탈락기업은 외부감사기업보다는 증권거래소 상장기업에서 빈번히 발생

-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은 신규진입 3년 후에 대기업 유지비율이 평균보다 높아서 유예기간 악용기업이 적은 것처럼 볼 수 있지만, 2년 후 유지비율은 상대적으로 낮는데 이는 대기업에서 이탈했다가 재차 진입하는 기업들이 많다는 증거이므로 유예기간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음을 암시
- 증권거래소 상장기업의 경우 신규진입 이후 기간경과에 따라 유지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현상을 보여 주고 있으며, 특히 1년과 3년 후에 이탈기업이 급격히 증가하는 형태를 보임
- 외부감사기업은 유지비율이 2년 후에 전년도보다 다소 높아져 재차 대기업에 진입하는 기업이 일부 있지만 유예기간 동안 다른 기업보다 높아서 대기업 탈락기업이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

V. 관계회사제도 도입의 효과 분석

1. 관계회사제도의 개념

- 관계회사제도는 미국과 7개 유럽연합 회원국이 채택하고 있으나 여기에서는 미국제도를 중심으로 제시함(세부내용은 미연방규정 121.103 참조)

1) 관계회사와 관련된 회사유형

- 주식소유권(stock ownership)에 의한 관계
 - ㉠ 개인 또는 법인이 회사의 의결권 있는 지분의 50%이상을 소유 또는 지배권한이 있는 경우
 - ㉡ 2인 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이 회사의 의결권 있는 지분의 50%이하를 소유하지만 그들이 비슷한 비율의 주식을 소유하면서 최대주주인 경우
- 공동경영(common management)에 의한 관계
 - ㉠ 한 회사의 이사회나 경영을 지배하는 임원, 이사, 경영진 또는 파트너가 다른 회사의 이사회나 경영을 지배하는 경우
- 연계회사(linked enterprise) - 유럽연합의 사례
 - ㉠ 다른 회사에 대한 과반수의 주주 의결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 다른 회사에 대한 관리, 경영 및 감독기구 구성원의 과반수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경우
 - ㉢ 다른 회사에 대해 계약, 각서, 규정 또는 정관에 따라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 ㉣ 다른 회사의 주주 혹은 구성원과의 합의에 따라 그 회사의 의결권의 과반수를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경우

2) 관계회사의 중소기업 판정 방식

- 관계회사는 모기업의 출자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출자비율에 상응하는 모기업(매출액, 근로자수 등) 자원을 관계회사 자원에 합산하여 관계회사의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
- 관계회사는 모기업의 출자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모기업(매출액, 근로자수 등) 자원 전체를 관계회사 자원에 합산하여 관계회사의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

3) 평가요소의 측정방법

○ 매출액

- ㉠ 최근 3개년 사업연도의 매출액 합을 3으로 나눈 값으로 하며, 사업연도가 3개년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활동 기간의 총 매출액을 사업활동을 수행한 연수를 곱한 이후에 52로 나누어 산출
- ㉡ 관계회사를 갖는 당해 회사의 연평균 매출액은 관계회사의 연평균 매출액을 합하여 산출
- ㉢ 신청일 이전 또는 판정 기간 중에 관계회사를 갖게 되었거나 관계회사가 된 경우 동 회사의 매출액을 합산
- ㉣ 관계회사 관계가 규모판정 기준일 이전에 종료되었을 경우 종전 관계회사의 매출액은 당 회사의 매출액에 포함하지 않으며 이는 관계가 종료된 후의 기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규모판정을 위한 전체 기간에 걸쳐 적용

○ 근로자 수

- ㉠ 상근직, 시간직과 임시직 및 국내외 관계회사 종업원을 포함
- ㉡ 관계회사를 포함하는 당해 회사의 평균 근로자 수는 최근 12개월 기간 중 각 급여지급일의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산출
- ㉢ 당해 업체의 사업활동기간이 12개월이 되지 않을 경우 동 기간 중 각 급여지급일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계산
- ㉣ 신청일 이전 또는 판정 적용기간 중에 관계회사를 갖게 되었거나 관계회사가 되었을 경우 동 회사의 근로자 수를 합산
- ㉤ 관계회사와의 관계가 규모판정 기준일 이전에 종료되었을 경우 종전 관계회사 근로자 수는 당해 회사의 근로자 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이는 관계가 종료된 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규모판정을 위한 전체 기간에 걸쳐 적용

2. 관계회사제도 도입효과의 민감도 분석

1) 출자비율 만큼 모기업 자원을 자회사에 합산

가. 전체 자회사 대상 분석

□ 대기업을 보유한 전체 자회사 중에서 기업정보 식별이 가능한 6,754개를 대상으로 관계회사제도 도입 전·후의 대기업 수를 비교함으로써 제도도입의 효과를 분석(부록5.xls 참조)

※ 모기업이 증권선물거래소 상장기업과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인 경우

○ 분석은 관계회사제도 도입 전 자회사의 대기업 수와 도입 후 자회사의 대기업 수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 하되, 대기업 여부는 3가지 법률(별표1과 별표2)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평가

<표 5-1> 관계회사제도 도입 전·후의 대기업 수 비교

적용기준	①			①+②			①+②+③		
표 분 수	6,754			6,754			6,754		
구 분	기업	증가	증감	기업	증가	증감	기업	증가	증감
도입 전	2,517			4,411			4,523		
도입 후	10%	3,620	1,103		4,648	237		4,714	191
	20%	4,146	1,629	526	4,856	445	208	4,907	384
	30%	4,457	1,940	311	5,040	629	184	5,069	546
	40%	4,663	2,146	206	5,157	746	117	5,172	649
	50%	4,874	2,357	211	5,306	895	149	5,314	791
	60%	5,040	2,523	166	5,414	1,003	108	5,419	896
	70%	5,200	2,683	160	5,526	1,115	112	5,529	1,006
	80%	5,337	2,820	137	5,615	1,204	89	5,618	1,095
	90%	5,455	2,938	118	5,707	1,296	92	5,709	1,186
	100%	5,564	3,047	109	5,791	1,380	84	5,793	1,270

- 기준①: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호 별표1의 기준에 의한 분류
- 기준②: 모기업이 출자총액제한집단에 속하는 경우 자회사를 대기업으로 분류
- 기준③: 자산총액이 5천억 이상인 모기업이 발행주식총수의 30%이상인 자회사는 대기업으로 분류

주) 기업은 대기업 수, 증가는 관계회사제도 도입으로 인해 추가로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 수, 증감은 관계회사 적용기준 지분비율의 변화에 따라 추가로 대기업에 편입되는 기업 수를 의미함

-
- 관계회사제도는 대기업 자회사를 중소기업에서 배제시키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별표1(기준①)을 적용한 경우 2,517개가 대기업으로 분류되었지만 모기업 자원의 10%를 자회사에 합산하여 평가한 결과 대기업이 3,620개로 증가하여 관계회사제도 도입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
 - 기준①에 기준②(모기업이 출자총액제한집단에 집단에 속한 자회사는 대기업으로 간주)를 추가하여 대기업을 평가한 결과도 관계회사제도 도입으로 대기업이 237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현행 중소기업범위관련 규정을 모두 반영한 경우 대기업 수는 관계회사제도 적용 전 4,523개에서 4,714개로 191개가 증가하며, 모기업 자원 전체(100%)를 자회사에 반영하면 1,270개 기업체가 추가로 대기업에 편입되는 것으로 분석

 - 관계회사제도를 적용하는 출자비율 수준의 결정도 제도도입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인으로 작용
 - 중소기업 범주기준 3가지를 모두 반영하는 경우 관계회사제도 적용기준 지분비율을 10%로 하면 대기업에 추가 편입되는 자회사는 191개 이지만, 100%를 적용하면 1,270개가 추가로 대기업으로 분류되어 적용기준 지분비율에 따라 대기업 분류기업 수가 6.6배 차이가 발생

 - 앞 분석결과는 중소기업법상 대기업이 아닌 주권상장법인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업을 모기업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에 관계회사제도 도입효과를 과대평가할 가능성이 존재
 - 모기업에 포함된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중에는 법률상 중소기업범주에 포함되는 상당수 기업이 존재하기 때문
 - ⇒ 경영능력이 대기업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모기업이 주권상장을 이유로 대기업으로 분류된다면 해당기업의 자회사는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을 감수
-

※ 모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의 대기업인 경우

□ 모기업을 법률상 대기업으로 제한해도 관계회사제도 도입이 대기업 자회사가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상당한 성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분석

○ 별표1(기준①)을 적용한 경우 2,106개 기업체가 대기업으로 분류되었지만 모기업 자원의 10%를 자회사에 합산하여 평가하면 1,061개 업체가 추가로 대기업에 편입되고, 50%를 반영하는 경우 1,933개 자회사가 추가로 대기업에 편입되는 효과가 발생

<표 5-2> 관계회사제도 도입 전·후의 대기업 수 비교

적용기준	①			①+②			①+②+③			
표본 수	4,473			4,473			4,473			
구분	기업	증가	증감	기업	증가	증감	기업	증가	증감	
도입 전	2,106			3,579			3,690			
도입 후	10%	3,122	1,016		3,774	195		3,839	149	
	20%	3,523	1,417	401	3,909	330	135	3,959	269	120
	30%	3,759	1,653	236	4,038	459	129	4,066	376	107
	40%	3,910	1,804	151	4,119	540	81	4,133	443	67
	50%	4,039	1,933	129	4,201	622	82	4,208	518	75
	60%	4,142	2,036	103	4,267	688	66	4,271	581	63
	70%	4,225	2,119	83	4,301	722	34	4,319	629	48
	80%	4,299	2,193	74	4,350	771	49	4,352	662	33
	90%	4,335	2,229	36	4,373	794	23	4,374	684	22
100%	4,358	2,252	23	4,384	805	11	4,385	695	11	

- 기준①: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호 별표1의 기준에 의한 분류
 - 기준②: 모기업이 출자총액제한집단에 속하는 경우 자회사를 대기업으로 분류
 - 기준③: 자산총액이 5천억 이상인 모기업이 발행주식총수의 30%이상인 자회사는 대기업으로 분류
- 주) 기업은 대기업 수, 증가는 관계회사제도 도입으로 인해 추가로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 수, 증감은 관계회사 적용기준 지분비율의 변화에 따라 추가로 대기업에 편입되는 기업 수를 의미함

-
-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세가지 중소기업법주 관련 법령을 반영해도 관계회사제도가 대기업의 자회사를 중소기업에서 배제시키는데 상당한 성과가 발생
 - 관계회사제도 도입 전에 4,473개의 자회사 중에서 3,690개가 대기업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모기업 자원의 10%를 자회사에 반영하면 대기업 수는 149개가 증가하며, 기준 지분비율을 100%로 하면 4,385개가 대기업으로 분류되어 추가로 695개 기업이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분석
 - 관계회사제도 도입으로 최대 695개 자회사가 추가로 대기업에 편입되어 숫자기준으로 성과가 크지 않다고 결정하는 것은 관계회사제도의 성과를 과소 평가하는 문제가 발생
 - 비율로 보면 관계회사제도 도입 전 자회사의 대기업 편입비율은 82.5%(3,690/4,473) 이었지만, 제도도입으로 편입비율은 최대 98%까지 증가하게 되어 자회사를 중소기업에서 배제하는데 상당한 성과를 발생시킴

나. 자회사의 소속시장별 분석

※ 모기업이 증권선물거래소 상장기업과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인 경우

□ 관계회사제도 도입효과는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보다 외부감사기업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충분히 예상되는 결과

○ 적용기준 세가지(①+ ②+ ③)를 모두 적용하여 기준비율 100%를 가정하면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은 78개와 119개 자회사가 추가로 대기업에 편입되지만 외부감사기업은 1,073개 기업이 대기업에 추가로 편입되는 성과가 발생

○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은 기업규모가 커서 대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체가 많지만 대다수 외부감사기업은 중소기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제도도입 효과가 외부감사기업에서 높게 발생하게 됨

<표 5-3> 자회사 소속시장간 관계회사제도 도입 전·후의 대기업 수 비교

적용기준	①									①+ ②+ ③									
	증권거래소			코스닥시장			외부감사			증권거래소			코스닥시장			외부감사			
표본 수	1,150			407			5,197			1,150			407			5,197			
구분	기업	증가	증감	기업	증가	증감	기업	증가	증감	기업	증가	증감	기업	증가	증감	기업	증가	증감	
도입 전	922			135			1,460			1,013			208			3,302			
도입 후	10%	989	67		176	41		2,455	995		1,028	15		219	11		3,467	165	
	20%	1,010	88	21	208	73	32	2,928	1,468	473	1,037	24	9	235	27	16	3,635	333	168
	30%	1,028	106	18	230	95	22	3,199	1,739	271	1,045	32	8	249	41	14	3,775	473	140
	40%	1,036	114	8	248	113	18	3,379	1,919	180	1,048	35	3	263	55	14	3,861	559	86
	50%	1,053	131	17	263	128	15	3,558	2,098	179	1,062	49	14	276	68	13	3,976	674	115
	60%	1,061	139	8	277	142	14	3,702	2,242	144	1,067	54	5	289	81	13	4,063	761	87
	70%	1,070	148	9	291	156	14	3,839	2,379	137	1,076	63	9	300	92	11	4,153	851	90
	80%	1,076	154	6	302	167	11	3,959	2,499	120	1,081	68	5	310	102	10	4,227	925	74
	90%	1,082	160	6	314	179	12	4,059	2,599	100	1,086	73	5	320	112	10	4,303	1,001	76
100%	1,087	165	5	321	186	7	4,156	2,696	97	1,091	78	5	327	119	7	4,375	1,073	72	

- 기준①: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호 별표1의 기준에 의한 분류
- 기준②: 모기업이 출자총액제한집단에 속하는 경우 자회사를 대기업으로 분류
- 기준③: 자산총액이 5천억 이상인 모기업이 발행주식총수의 30%이상인 자회사는 대기업으로 분류

주) 기업은 대기업 수, 증가는 관계회사제도 도입으로 인해 추가로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 수, 증감은 관계회사 적용기준 지분비율의 변화에 따라 추가로 대기업에 편입되는 기업 수를 의미함

주) 외부감사는 금융감독원 등록기업, 외부감사기업 및 일반법인을 합계한 수치(첨부 3참조)

□ 앞의 분석은 10,524개 자회사 중에서 기업식별이 가능한 6,754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되었고, 공개기업이 갖는 특성으로 인해 업체 수 기준에 의존한 평가방법은 제도도입 효과를 희석시킬 가능성이 존재하여 편입비율에 대한 추가검증을 실시

○ 세가지(①+ ②+ ③)를 기준을 적용하면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시장에 속한 자회사는 최대 94.9%와 80.3%까지 대기업으로 편입되어, 도입 전 88.1%와 51.1%에 비해 월등히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됨

<표 5-4> 관계회사제도 도입 시 모기업의 출자비율에 따른 자회사의 대기업 편입비율

적용기준	시장구분	표본 수	도입 전	도입 후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①	증권거래소	1,150	80.2	86.0	87.8	89.4	90.1	91.6	92.3	93.0	93.6	94.1	94.5
	코스닥시장	407	33.2	43.2	51.1	56.5	60.9	64.6	68.1	71.5	74.2	77.1	78.9
	등 록	1,074	50.1	66.5	73.6	77.1	79.3	81.8	83.1	84.4	85.4	86.9	88.5
	외부감사	3,803	24.1	45.1	55.2	60.9	64.8	68.4	71.4	74.3	76.9	78.8	80.7
	일 반	320	2.2	8.4	11.6	16.9	19.7	24.7	29.4	34.1	36.9	40.9	42.8
	합 계	6,754	37.3	53.6	61.4	66.0	69.0	72.2	74.6	77.0	79.0	80.8	82.4
①+②	증권거래소	1,150	87.7	89.1	89.9	90.8	91.0	92.3	92.8	93.6	94.0	94.4	94.9
	코스닥시장	407	50.6	53.6	57.5	61.2	64.6	67.8	71.0	73.7	76.2	78.6	80.3
	등 록	1,074	77.5	79.8	82.2	83.9	85.3	86.8	87.2	87.9	88.6	89.8	90.7
	외부감사	3,803	60.6	65.2	69.2	72.6	74.7	77.1	79.0	81.0	82.5	83.9	85.4
	일 반	320	18.4	20.9	22.8	26.9	28.4	32.2	36.3	39.7	41.9	45.6	47.2
	합 계	6,754	65.3	68.8	71.9	74.6	76.4	78.6	80.2	81.8	83.1	84.5	85.7
①+②+③	증권거래소	1,150	88.1	89.4	90.2	90.9	91.1	92.3	92.8	93.6	94.0	94.4	94.9
	코스닥시장	407	51.1	53.8	57.7	61.2	64.6	67.8	71.0	73.7	76.2	78.6	80.3
	등 록	1,074	78.4	80.4	82.8	84.1	85.4	86.9	87.3	87.9	88.6	89.8	90.7
	외부감사	3,803	63.1	66.6	70.2	73.2	75.0	77.3	79.1	81.0	82.6	84.0	85.5
	일 반	320	19.4	21.6	23.4	27.2	28.8	32.5	36.3	39.7	41.9	45.6	47.2
	합 계	6,754	67.0	69.8	72.7	75.1	76.6	78.7	80.2	81.9	83.2	84.5	85.8

- 기준①: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호 별표1의 기준에 의한 분류
- 기준②: 모기업이 출자총액제한집단에 속하는 경우 자회사를 대기업으로 분류
- 기준③: 자산총액이 5천억 이상인 모기업이 발행주식총수의 30%이상인 자회사는 대기업으로 분류

○ 외부감사기업의 경우도 85.5% 기업체가 대기업에 편입되어 제도도입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일반법인은 전체 대기업 편입비율은 47.2%로 상대적으로 낮지만 도입 전 19.4%의 2.5배에 달하는 성과를 보임

※ 모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의 대기업인 경우

- 기업체수 기준 관계회사제도 도입성과는 외부감사기업에서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어 앞의 분석 결과와 동일한 현상이 발생
- 세가지 기준을 동시에 적용한 경우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시장에 속한 자회사는 최대 31개와 50개 기업체가 추가로 대기업에 편입되지만, 외부감사기업은 614개 기업체가 대기업에 추가 편입
 - 외부감사기업 자회사의 경우 추가 편입되는 대기업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기준 지분비율을 높임에 따라 추가로 대기업에 편입되는 기업 수는 점진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임

<표 5-5> 자회사 소속시장간 관계회사제도 도입 전·후의 대기업 수 비교

적용기준	①									①+②+③									
	증권거래소			코스닥시장			외부감사			증권거래소			코스닥시장			외부감사			
시장구분	표본 수			표본 수			표본 수			표본 수			표본 수			표본 수			
구분	기업	증가	증감	기업	증가	증감	기업	증가	증감	기업	증가	증감	기업	증가	증감	기업	증가	증감	
도입 전	767			113			1,226			833			167			2,690			
도입 후	10%	825	58	149	36		2,148	922		842	9		174	7		2,823	133		
	20%	836	69	170	57	21	2,517	1,291	369	847	14	5	183	16	9	2,929	239	106	
	30%	849	82	13	185	72	15	2,725	1,499	208	853	20	6	192	25	9	3,021	331	92
	40%	851	84	2	197	84	12	2,862	1,636	137	854	21	1	201	34	9	3,078	388	57
	50%	855	88	4	202	89	5	2,982	1,756	120	858	25	4	205	38	4	3,145	455	67
	60%	858	91	3	205	92	3	3,079	1,853	97	860	27	2	208	41	3	3,203	513	58
	70%	860	93	2	209	96	4	3,156	1,930	77	862	29	2	210	43	2	3,247	557	44
	80%	863	96	3	212	99	3	3,224	1,998	68	864	31	2	212	45	2	3,276	586	29
	90%	864	97	1	214	101	2	3,257	2,031	33	864	31	0	214	47	2	3,296	606	20
	100%	864	97	0	217	104	3	3,277	2,051	20	864	31	0	217	50	3	3,304	614	8

• 기준①: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호 별표1의 기준에 의한 분류
 • 기준②: 모기업이 출자총액제한집단에 속하는 경우 자회사를 대기업으로 분류
 • 기준③: 자산총액이 5천억 이상인 모기업이 발행주식총수의 30%이상인 자회사는 대기업으로 분류
 주) 기업은 대기업 수, 증가는 관계회사제도 도입으로 인해 추가로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 수, 증감은 관계회사 적용기준 지분비율의 변화에 따라 추가로 대기업에 편입되는 기업 수를 의미함
 주) 외부감사는 금융감독원 등록기업, 외부감사기업 및 일반법인을 합계한 수치(첨부4 참조)

□ 업체 수 기준 평가결과와 달리 비율기준으로 본 관계회사제도 도입효과는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자회사에서도 높게 나타남

○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시장 상장 자회사의 대기업 편입비율은 제도도입 전 96.1%와 75.6%에서 99.7%와 98.2%로 증가율은 크지 않지만 대부분의 기업체가 대기업에 편입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관계회사 제도도입은 이들 기업들이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문제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발생

- 앞 분석과 달리 시장구분에 관계없이 자회사의 98% 이상이 대기업에 편입되고 있어 관계회사제도는 적어도 대기업 자회사가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한계를 극복할 기회를 제공

<표 5-6> 관계회사제도 도입 시 모기업의 출자비율에 따른 자회사의 대기업 편입비율

적용기준	시장구분	표본 수	도입 전	도입 후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①	증권거래소	867	88.5	95.2	96.4	97.9	98.2	98.6	99.0	99.2	99.5	99.7	99.7
	코스닥시장	221	51.1	67.4	76.9	83.7	89.1	91.4	92.8	94.6	95.9	96.8	98.2
	등 록	807	57.7	79.3	86.7	90.8	92.8	95.3	96.2	97.1	97.5	97.9	98.6
	외부감사	2,473	30.6	60.2	72.4	79.1	83.7	87.3	90.5	92.8	95.3	96.2	96.7
	일 반	105	3.8	18.1	25.7	35.2	41.0	52.4	62.9	73.3	77.1	84.8	85.7
	합 계	4,473	47.1	69.8	78.8	84.0	87.4	90.3	92.6	94.5	96.1	96.9	97.4
①+②	증권거래소	867	95.6	96.8	97.3	98.3	98.4	98.8	99.2	99.4	99.7	99.7	99.7
	코스닥시장	221	74.7	78.3	82.4	86.9	91.0	92.8	94.1	94.6	95.9	96.8	98.2
	등 록	807	88.2	91.2	93.2	95.3	96.4	97.8	98.3	98.5	98.8	98.9	99.0
	외부감사	2,473	74.2	80.1	84.2	87.7	90.2	92.4	94.2	95.2	96.7	97.2	97.5
	일 반	105	37.1	41.9	45.7	52.4	54.3	62.9	72.4	76.2	81.9	88.6	89.5
	합 계	4,473	80.0	84.4	87.4	90.3	92.1	93.9	95.4	96.2	97.3	97.8	98.0
①+②+③	증권거래소	867	96.1	97.1	97.7	98.4	98.5	99.0	99.2	99.4	99.7	99.7	99.7
	코스닥시장	221	75.6	78.7	82.8	86.9	91.0	92.8	94.1	95.0	95.9	96.8	98.2
	등 록	807	89.5	92.1	93.9	95.5	96.5	97.9	98.4	98.6	98.8	98.9	99.0
	외부감사	2,473	77.9	82.2	85.8	88.7	90.6	92.5	94.3	95.8	96.8	97.3	97.5
	일 반	105	40.0	43.8	47.6	53.3	55.2	63.8	72.4	79.0	81.9	88.6	89.5
	합 계	4,473	82.5	85.8	88.5	90.9	92.4	94.1	95.5	96.6	97.3	97.8	98.0

- 기준①: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호 별표1의 기준에 의한 분류
- 기준②: 모기업이 출자총액제한집단에 속하는 경우 자회사를 대기업으로 분류
- 기준③: 자산총액이 5천억 이상인 모기업이 발행주식총수의 30%이상인 자회사는 대기업으로 분류

-
- 중소기업기본법의 별표1을 적용한 경우 47.1%가 대기업으로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과 총액출자제한 집단의 기업을 모기업으로 사용한 경우의 37.3%보다 약 10%가 증가
 - 모기업 자산의 50%를 자회사에 합산하면 90.3%의 관계회사가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고, 일반기업도 성과가 52.4%가 대기업으로 분류됨

 - 중소기업기본법의 별표1의 기준과 상호출자제한집단의 기업과 자산총액 5천억 이상의 모기업이 30%이상의 지분을 출자한 자회사를 대기업으로 간주하면 82.5%가 대기업으로 분류됨
 - 모기업 자산의 50%를 자회사에 합산하면 94.1%의 관계회사가 대기업으로 분류되어 대부분 관계회사가 중소기업시장에 참여하는 것을 예방

다. 자회사의 업종별 분석

※ 모기업이 증권선물거래소 상장기업과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인 경우

□ 관계회사제도 도입효과는 제조업에 비해 비제조업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발생할 전망

○ 별표1(기준①)을 적용하면 제조업의 경우 297개 자회사가 대기업에 추가로 편입되지만 비제조업은 806개 업체가 추가 편입되어 2.7배 많은 자회사가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효과가 발생

○ 세가지(①+ ②+ ③) 기준을 적용한 경우 제조업은 35개 기업이 대기업에 추가 편입되지만, 비제조업은 156개 업체가 추가로 편입되는 성과가 발생

<표 5-7> 자회사 업종별 관계회사제도 도입 전·후의 대기업 수 비교

적용기준	①						①+②						①+②+③						
	제조업			비제조업			제조업			비제조업			제조업			비제조업			
업종	제조업			비제조업			제조업			비제조업			제조업			비제조업			
표본 수	2,781			3,973			2,781			3,973			2,781			3,973			
구분	기업	증가	증감	기업	증가	증감	기업	증가	증감	기업	증가	증감	기업	증가	증감	기업	증가	증감	
	874			1,634			1,542			2,869			1,582			2,941			
도입 후	10%	1,171	297		2,449	806		1,583	41		3,065	196		1,617	35		3,097	156	
	20%	1,355	481	184	2,791	1,148	342	1,661	119	78	3,195	326	130	1,689	107	72	3,218	277	121
	30%	1,480	606	125	2,977	1,334	186	1,728	186	67	3,312	443	117	1,747	165	58	3,322	381	104
	40%	1,593	719	113	3,070	1,427	93	1,796	254	68	3,361	492	49	1,806	224	59	3,366	425	44
	50%	1,695	821	102	3,179	1,536	109	1,873	331	77	3,433	564	72	1,878	296	72	3,436	495	70
	60%	1,787	913	92	3,253	1,610	74	1,931	389	58	3,483	614	50	1,935	353	57	3,484	543	48
	70%	1,879	1,005	92	3,321	1,678	68	1,998	456	67	3,528	659	45	2,000	418	65	3,529	588	45
	80%	1,967	1,093	88	3,370	1,727	49	2,056	514	58	3,559	690	31	2,058	476	58	3,560	619	31
	90%	2,028	1,154	61	3,427	1,784	57	2,108	566	52	3,599	730	40	2,109	527	51	3,600	659	40
	100%	2,091	1,217	63	3,473	1,830	46	2,164	622	56	3,627	758	28	2,165	583	56	3,628	687	28

• 기준①: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호 별표1의 기준에 의한 분류

• 기준②: 모기업이 출자총액제한집단에 속하는 경우 자회사를 대기업으로 분류

• 기준③: 자산총액이 5천억 이상인 모기업이 발행주식총수의 30%이상인 자회사는 대기업으로 분류

주) 기업은 대기업 수, 증가는 관계회사제도 도입으로 인해 추가로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 수, 증감은 관계회사 적용기준 지분비율의 변화에 따라 추가로 대기업에 편입되는 기업 수를 의미함

※ 모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의 대기업인 경우

□ 모기업을 법률상 대기업으로 제한한 경우에도 관계회사제도 도입효과는 비제조업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발생할 것으로 분석

○ 한가지 기준(①)을 적용한 경우 제조업은 278개 자회사가 대기업에 추가 편입되고, 비제조업은 738개 업체가 추가로 편입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세가지 기준을 적용한 경우에도 제조업은 24개 기업이 추가로 대기업에 편입되지만 비제조업은 125개 기업이 대기업으로 추가 분류되는 성과가 발생

- 비율기준으로 보면 제조업은 제도도입으로 자회사의 대기업 비율은 20%(77.5%→97.5) 증가하지만, 비제조업은 12.7%(85.6→98.3) 증가에 그치고 있어 제조업에서 성과가 상대적으로 높게 발생

<표 5-8> 자회사 업종별 관계회사제도 도입 전·후의 대기업 수 비교

적용기준	①						①+②						①+②+③						
업종	제조업			비제조업			제조업			비제조업			제조업			비제조업			
표본수	1,713			2,760			1,713			2,760			1,713			2,760			
구분	기업	증가	증감	기업	증가	증감	기업	증가	증감	기업	증가	증감	기업	증가	증감	기업	증가	증감	
도입 전	737			1,369			1,278			2,292			1,327			2,363			
도입 후	10%	1,015	278		2,107	738		1,317	30		2,457	165		1,351	24		2,488	125	
	20%	1,174	437	159	2,349	980	242	1,380	93	63	2,529	237	72	1,408	81	57	2,551	188	63
	30%	1,284	547	110	2,475	1,106	126	1,442	155	62	2,596	304	67	1,461	134	53	2,605	242	54
	40%	1,379	642	95	2,531	1,162	56	1,497	210	55	2,622	330	26	1,507	180	46	2,626	263	21
	50%	1,448	711	69	2,591	1,222	60	1,546	259	49	2,655	363	33	1,551	224	44	2,657	294	31
	60%	1,513	776	65	2,629	1,260	38	1,585	298	39	2,682	390	27	1,589	262	38	2,682	319	25
	70%	1,570	833	57	2,655	1,286	26	1,604	317	19	2,697	405	15	1,622	295	33	2,697	334	15
	80%	1,622	885	52	2,677	1,308	22	1,645	358	41	2,705	413	8	1,647	320	25	2,705	342	8
	90%	1,646	909	24	2,689	1,320	12	1,662	375	17	2,711	419	6	1,663	336	16	2,711	348	6
	100%	1,656	919	10	2,702	1,333	13	1,670	383	8	2,714	422	3	1,671	344	8	2,714	351	3

- 기준①: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호 별표1의 기준에 의한 분류
- 기준②: 모기업이 출자총액제한집단에 속하는 경우 자회사를 대기업으로 분류
- 기준③: 자산총액이 5천억 이상인 모기업이 발행주식총수의 30%이상인 자회사는 대기업으로 분류

주) 기업은 대기업 수, 증가는 관계회사제도 도입으로 인해 추가로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 수, 증감은 관계회사 적용기준 지분비율의 변화에 따라 추가로 대기업에 편입되는 기업 수를 의미함

<표 5-9> 출자비율에 따른 자회사의 업종별 대기업 편입비율

- 관계회사제도 효과를 대기업 편입비율 기준으로 보면 제조업에도 성과가 있을 전망
- 제도도입 전 자회사의 대기업 수가 적었던 업종을 중심으로 관계회사제도 효과가 높게 발생하는 것으로 평가
- 섬유제품(D17), 봉제의복(D18), 고무(D25) 등의 업종은 도입비율을 100%로 가정하면 관계회사제도 도입으로 자회사의 대기업 편입비율이 3.5배 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제도도입 전 자회사의 대기업 편입비율이 비교적 높은 비금속(D26), 기타전기(D31) 등의 업종도 자회사의 대기업 편입비율이 20%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업종 코드	업종 명	표본	도입 전	도입 후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A	농업임업	11	63.6	81.8	90.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B	어업	4	50.0	50.0	50.0	75.0	75.0	75.0	75.0	75.0	75.0	75.0	75.0	75.0
C	광업	8	87.5	87.5	87.5	87.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D15	음 식 료	151	63.6	66.9	75.5	82.1	84.8	88.7	91.4	91.4	92.1	93.4	94.0	94.0
D16	담배제조	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D17	섬유제품	14	28.6	28.6	35.7	50.0	71.4	78.6	85.7	85.7	85.7	85.7	85.7	92.9
D18	봉제의복	36	55.6	63.9	63.9	69.4	80.6	83.3	88.9	94.4	100.0	100.0	100.0	100.0
D19	가죽가방	7	71.4	71.4	71.4	85.7	85.7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D20	목재나무	10	30.0	30.0	30.0	30.0	30.0	60.0	80.0	80.0	100.0	100.0	100.0	100.0
D21	펄프종이	32	43.8	46.9	59.4	68.8	75.0	84.4	93.8	93.8	93.8	93.8	93.8	93.8
D22	출판인쇄	26	65.4	65.4	69.2	73.1	73.1	73.1	76.9	80.8	80.8	88.5	88.5	88.5
D23	코 크 스	17	88.2	88.2	88.2	94.1	94.1	94.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D24	화 합 물	362	84.8	85.4	88.7	90.3	91.4	93.1	95.0	95.9	97.2	97.8	98.3	98.3
D25	고 무	31	67.7	67.7	71.0	74.2	80.6	80.6	83.9	87.1	93.5	96.8	100.0	100.0
D26	비 금 속	112	75.9	75.9	80.4	81.3	83.0	85.7	90.2	92.9	93.8	95.5	95.5	95.5
D27	1차 금속	118	84.7	87.3	88.1	92.4	92.4	92.4	93.2	95.8	97.5	97.5	98.3	98.3
D28	조립금속	33	54.5	54.5	57.6	63.6	72.7	78.8	81.8	90.9	100.0	100.0	100.0	100.0
D29	기타기계	140	84.3	85.7	87.9	90.0	93.6	94.3	95.7	96.4	98.6	100.0	100.0	100.0
D30	컴 퓨 터	9	77.8	77.8	77.8	77.8	88.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D31	기타전기	64	71.9	76.6	79.7	84.4	87.5	89.1	90.6	92.2	92.2	93.8	95.3	95.3
D32	전자부품	254	85.8	86.6	89.0	89.8	90.9	93.3	93.7	96.1	96.5	97.2	97.6	97.6
D33	의료정밀	55	89.1	89.1	89.1	90.9	92.7	92.7	94.5	96.4	100.0	100.0	100.0	100.0
D34	자 동 차	172	69.8	71.5	75.6	80.2	85.5	90.7	93.0	97.1	97.7	97.7	97.7	97.7
D35	운송장비	42	97.6	97.6	97.6	97.6	97.6	97.6	97.6	97.6	97.6	100.0	100.0	100.0
D36	가구제조	27	78.6	78.6	78.6	85.7	85.7	85.7	85.7	92.9	92.9	100.0	100.0	100.0
E	수도가스	162	92.0	92.0	93.8	94.4	94.4	95.7	95.7	95.7	95.7	95.7	95.7	95.7
F	건설업	191	73.3	75.4	76.4	79.1	81.2	85.9	89.5	90.6	92.7	94.2	94.2	94.2
G	도매소매	411	84.2	90.3	94.4	97.3	97.8	99.3	99.5	99.8	99.8	99.8	99.8	99.8
H	숙박음식	96	90.6	91.7	93.8	96.9	96.9	97.9	97.9	97.9	97.9	97.9	97.9	97.9
I	운 수 업	220	84.5	86.4	88.6	91.8	92.7	93.6	95.5	97.3	97.7	97.7	97.7	97.7
J	통 신 업	102	85.3	88.2	92.2	95.1	97.1	97.1	99.0	99.0	99.0	99.0	99.0	99.0
K	금융보험	441	90.7	97.1	98.4	99.1	99.8	99.8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L	부 동 산	109	67.9	90.8	96.3	99.1	99.1	99.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M	사업서비	643	86.3	89.6	91.4	93.5	94.2	95.6	96.3	97.0	97.5	97.8	98.3	98.3
O	교육서비	28	96.4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Q	오락문화	290	88.3	91.4	92.8	93.1	93.8	94.5	96.2	97.2	97.2	97.6	97.6	97.6
R	공공수리	44	90.9	95.5	97.7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계		4,473	82.5	85.8	88.5	90.9	92.4	94.1	95.5	96.6	97.3	97.8	98.0	98.0

2) 출자비율이 일정수준을 초과하면 모기업 자원 전체를 자회사에 합산

가. 전체 자회사 대상 분석

- 모기업의 출자지분이 일정수준을 초과하면 모기업 자원(평가지표인 매출액, 근로자 수, 매출액, 자본금) 전체를 자회사에 합산하여 자회사의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의 관계회사제도 효과를 분석함

※ 모기업이 증권선물거래소 상장기업과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인 경우

- 모기업의 출자지분이 일정수준을 초과하면 모기업 자원 전체를 대기업에 합산하는 방식의 관계회사 제도는 대기업 자회사의 중소기업 편입을 예방하는 효과가 발생

<표 5-10> 관계회사제도 도입 전·후의 대기업 수 비교

적용기준	①			①+②			①+②+③			
표 본 수	6,754			6,754			6,754			
구 분	기업	증가	증분	기업	증가	증분	기업	증가	증분	
도입 전	2,517			4,411			4,523			
도입 후	40%	3,112	595		4,815	404		4,826	303	
	50%	3,019	502	Δ93	4,746	335	Δ69	4,763	240	Δ63
	60%	2,883	366	Δ136	4,662	251	Δ84	4,702	179	Δ61
	70%	2,820	303	Δ63	4,622	211	Δ40	4,669	146	Δ33
	80%	2,785	268	Δ35	4,596	185	Δ26	4,646	123	Δ23
	90%	2,750	233	Δ35	4,576	165	Δ20	4,633	110	Δ13
	100%	2,681	164	Δ69	4,529	118	Δ47	4,608	85	Δ25

- 기준①: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호 별표1의 기준에 의한 분류
 - 기준②: 모기업이 출자총액제한집단에 속하는 경우 자회사를 대기업으로 분류
 - 기준③: 자산총액이 5천억 이상인 모기업이 발행주식총수의 30%이상인 자회사는 대기업으로 분류
- 주) 기업은 대기업 수, 증가는 관계회사제도 도입으로 인해 추가로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 수, 증감은 관계회사 적용기준 지분비율의 변화에 따라 추가로 대기업에 편입되는 기업 수를 의미함

-
- 제도도입 전 6,754개 자회사 중에서 대기업은 2,517개이었지만, 기준 지분비율을 40%로 가정하여 한 가지 적용기준(①)을 반영한 경우 자회사의 대기업 수 3,112개로 평가되어 관계회사제도 도입으로 595개 기업체가 추가로 대기업에 편입되는 것으로 분석
 - 동일 기업체로 간주할 수 있는 지분비율 100%를 소유한 자회사만을 대상으로 관계회사제도를 적용해도 대기업에 추가 편입되는 자회사 수는 164개로 나타남
 - 현재 운영되는 중소기업관련 법령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관계회사제도를 도입하면 최대 303개의 자회사가 추가로 대기업에 편입되는 것으로 분석되어 관계회사제도 도입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 지분비율이 일정수준을 초과하면 모기업 전체 자원을 자회사에 흡산하는 방식의 관계회사제도는 대기업 자회사의 중소기업 편입을 예상하는 효과가 발생하지만, 그 성과는 지분비율 만큼 모기업 자원을 자회사에 흡산하는 방식보다 상대적으로 낮음
 - 기준비율을 50%로 가정하여 현재 운영되는 세 가지 중소기업범주 규정을 모두 적용하면 모기업 전체 자원의 자회사 흡산방식은 240개의 자회사를 대기업에 추가로 편입시키는 효과가 발생하지만, 지분비율 만큼 모기업 자원의 자회사 흡산방식은 791개 기업체를 추가로 대기업에 편입시키는 성과가 발생(표5-1)
 - 이 결과는 모기업 규모가 중소기업 범주를 훨씬 초과하지만 적은 지분비율(30% 미만)로 자회사를 소유하여 발생하는 현상

※ 모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의 대기업인 경우

- 경영능력이 대기업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모기업이 대기업으로 간주됨으로 인해 관계회사제도 도입성과가 과대 평가되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모기업 중에서 법률상 대기업으로 분류된 기업체가 소유한 자회사 만을 대상으로 도입효과에 대한 추가분석을 진행

□ 기업체 수 기준으로 평가한 관계회사제도는 전체 자회사 대상보다 성과가 낮지만 법률상 대기업의 자회사에 적용해도 상당한 성과가 발생

○ 대기업의 투자비율이 40%를 초과하는 자회사를 대상으로 관계회사제도를 적용하면 도입 전보다 452개의 자회사가 추가로 대기업에 편입되며, 현재의 법령을 유지하면서 관계회사제도를 도입하면 추가로 176개 자회사가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됨

<표 5-11> 관계회사제도 도입 전·후의 대기업 수 비교

적용기준		①		①+②		①+②+③	
표 본 수		4,473		4,473		4,473	
구 분		기업	증 가	기업	증 가	기업	증 가
도입 전		2,106		3,579		3,690	
도입 후	40%	2,558	452	3,856	277	3,866	176
	50%	2,496	390	3,815	236	3,831	141
	60%	2,389	283	3,757	178	3,796	106
	70%	2,339	233	3,729	150	3,775	85
	80%	2,313	207	3,711	132	3,760	70
	90%	2,283	177	3,694	115	3,750	60
	100%	2,229	123	3,661	82	3,739	49

- 기준①: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호 별표1의 기준에 의한 분류
 - 기준②: 모기업이 출자총액제한집단에 속하는 경우 자회사를 대기업으로 분류
 - 기준③: 자산총액이 5천억 이상인 모기업이 발행주식총수의 30%이상인 자회사는 대기업으로 분류
- 주) 기업은 대기업 수, 증가는 관계회사제도 도입으로 인해 추가로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 수를 의미함

○ 176개 자회사가 추가로 대기업에 편입되어 관계회사제도 성과가 낮다고 진단할 수 있지만, 이 숫자는 대기업 전체 자회사의 3.9%(176/4,473)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준은 아님

- 특히 소수 자회사의 정부조달시장 참여가 문제되는 현실에서 176개 대기업 자회사의 조달시장 참여를 차단하는 것은 상당한 성과로 평가됨

나. 자회사의 소속시장별 분석

- 관계회사제도 도입성과가 기업환경 또는 기업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지를 검토하기 위해 자회사가 속한 시장에 따라 대기업 편입비율을 비교함

※ 모기업이 증권선물거래소 상장기업과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인 경우

- 기업체 수 기준 관계회사제도 성과는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자회사보다 외부감사 기업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발생
- 세가지 중소기업범주 규정을 모두 적용한 경우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은 관계회사제도 도입으로 5개와 7개 자회사 대기업에 추가 편입되지만, 외부감사기업의 경우 291개 추가로 대기업에 편입되는 결과가 발생

<표 5-12> 자회사 소속시장별 관계회사제도 도입 전·후의 대기업 수 비교

적용기준	①						①+②+③						
시장구분	증권거래소		코스닥시장		외부감사		증권거래소		코스닥시장		외부감사		
표 본 수	1,150		407		5,197		1,150		407		5,197		
구 분	기업	증가	기업	증가	기업	증가	대기업	증가	대기업	증가	대기업	증가	
도입 전	922		135		1,460		1,013		208		3,302		
도입 후	40%	936	14	148	13	2,028	568	1,018	5	215	7	3,593	291
	50%	927	5	144	9	1,948	488	1,015	2	211	5	3,537	235
	60%	925	3	140	5	1,818	358	1,015	2	211	5	3,476	174
	70%	924	2	139	4	1,757	297	1,014	1	211	5	3,444	142
	80%	924	2	137	2	1,724	264	1,014	1	209	3	3,423	121
	90%	924	2	136	1	1,690	230	1,014	1	209	3	3,410	108
	100%	923	1	135	0	1,623	163	1,014	1	208	2	3,386	84

- 기준①: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호 별표1의 기준에 의한 분류
- 기준②: 모기업이 출자총액제한집단에 속하는 경우 자회사를 대기업으로 분류
- 기준③: 자산총액이 5천억 이상인 모기업이 발행주식총수의 30%이상인 자회사는 대기업으로 분류

주) 기업은 대기업 수, 증가는 관계회사제도 도입으로 인해 추가로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 수, 증가는 관계회사 적용기준 지분비율의 변화에 따라 추가로 대기업에 편입되는 기업 수를 의미함

주) 외부감사는 금융감독원 등록기업, 외부감사기업 및 일반법인을 합계한 수치(첨부5 참조)

□ 출자비율 만큼 모기업 자원을 자회사에 합산하는 방식과 달리 관계회사제도가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시장 소속 자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

○ 기준비율을 40%로 가정한 경우 외부감사기업의 대기업 편입비율이 도입 전 63.1%에서 68.9%로 5.8%가 높아지고 있지만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은 0.4와 1.7% 증가하는데 그침

- 앞서 언급했듯이 관계회사제도 도입성고가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시장 소속 자회사에서 낮은 원인은 대다수 기업들이 중소기업범주를 초과하는 기업규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모기업의 적은 지분소유도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

<표 5-13> 관계회사제도 도입 시 모기업의 출자비율에 따른 자회사의 대기업 편입비율

적용기준	시장구분	표본 수	도입 전	도입 후						
				40%	50%	60%	70%	80%	90%	100%
①	증권거래소	1,150	80.2	81.4	80.6	80.4	80.3	80.3	80.3	80.3
	코스닥시장	407	33.2	36.4	35.4	34.4	34.2	33.7	33.4	33.2
	등 록	1,074	50.1	57.1	55.6	54.2	53.2	52.7	52.1	51.7
	외부감사	3,803	24.1	36.0	34.5	31.7	30.6	29.9	29.2	27.7
	일 반	320	2.2	14.7	12.2	9.7	7.5	6.6	5.9	4.7
	합 계	6,754	37.3	46.1	44.7	42.7	41.8	41.2	40.7	39.7
①+②	증권거래소	1,150	87.7	88.3	88.0	88.0	87.9	87.9	87.9	87.8
	코스닥시장	407	50.6	52.8	51.8	51.4	51.4	50.9	50.9	50.6
	등 록	1,074	77.5	81.5	80.5	79.8	79.3	79.1	78.8	78.5
	외부감사	3,803	60.6	68.8	67.6	65.9	65.2	64.7	64.3	63.2
	일 반	320	18.4	29.4	26.9	24.4	22.5	21.6	21.3	20.6
	합 계	6,754	65.3	71.3	70.3	69.0	68.4	68.0	67.8	67.1
①+②+③	증권거래소	1,150	88.1	88.5	88.3	88.3	88.2	88.2	88.2	88.2
	코스닥시장	407	51.1	52.8	51.8	51.8	51.8	51.4	51.4	51.1
	등 록	1,074	78.4	81.7	80.8	80.3	79.9	79.6	79.3	79.2
	외부감사	3,803	63.1	68.9	67.8	66.6	66.0	65.6	65.4	64.8
	일 반	320	19.4	29.7	27.8	25.3	23.4	22.5	22.2	21.6
	합 계	6,754	67.0	71.5	70.5	69.6	69.1	68.8	68.6	68.2

- 기준①: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호 별표1의 기준에 의한 분류
- 기준②: 모기업이 출자총액제한집단에 속하는 경우 자회사를 대기업으로 분류
- 기준③: 자산총액이 5천억 이상인 모기업이 발행주식총수의 30%이상인 자회사는 대기업으로 분류

※ 모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의 대기업인 경우

□ 실제 경영능력이 대기업 수준에 미달하는 기업의 모기업 포함에 따른 오류로 인해 관계회사제도 도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책오류를 예방하기 위해 법률상 대기업이 보유한 자회사를 대상으로 도입효과를 추가로 분석

○ 현행 중소기업법주관 세 가지 법률을 모두 적용한 경우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자회사는 10개 미만의 업체가 그리고 외부감사기업은 168개가 대기업에 추가로 편입되는 것으로 나타나서 기업공개 기업은 제도도입의 효과가 저조

<표 5-14> 자회사 소속시장별 관계회사제도 도입 전·후의 대기업 수 비교

적용기준	①						①+②+③						
시장구분	증권거래소		코스닥시장		외부감사		증권거래소		코스닥시장		외부감사		
표 본 수	867		221		3,385		867		221		3,385		
구 분	대기업	증가	대기업	증가	대기업	증가	대기업	증가	대기업	증가	대기업	증가	
도입 전	767		113		1,226		833		167		2,690		
도입 후	40%	778	11	125	12	1,655	429	835	2	173	6	2,858	168
	50%	771	4	121	8	1,604	378	834	1	169	2	2,828	138
	60%	769	2	117	4	1,503	277	834	1	169	2	2,793	103
	70%	768	1	116	3	1,455	229	833	0	169	2	2,773	83
	80%	768	1	115	2	1,430	204	833	0	168	1	2,759	69
	90%	768	1	114	1	1,401	175	833	0	168	1	2,749	59
	100%	767	0	113	0	1,349	123	833	0	167	0	2,739	49

- 기준①: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호 별표1의 기준에 의한 분류
 - 기준②: 모기업이 출자총액제한집단에 속하는 경우 자회사를 대기업으로 분류
 - 기준③: 자산총액이 5천억 이상인 모기업이 발행주식총수의 30%이상인 자회사는 대기업으로 분류
- 주) 기업은 대기업 수, 증가는 관계회사제도 도입으로 인해 추가로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 수, 증감은 관계회사 적용기준 지분비율의 변화에 따라 추가로 대기업에 편입되는 기업 수를 의미함
- 주) 외부감사는 금융감독원 등록기업, 외부감사기업 및 일반법인을 합제한 수치(첨부6 참조)

□ 자회사의 대기업 편입비율 기준도 관계회사제도가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자회사에 대해서는 효과가 제한적일 전망이지만, 외부감사법인 이하 기업에서는 상당한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평가됨

○ 현행 법령을 유지하면서 관계회사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시장 소속 자회사는 제도 도입으로 0.2%와 1.7%의 기업체가 추가로 대기업에 편입되는 반면에, 일반기업은 17.1% 기업체가 대기업에 추가 편입되는 것으로 분석됨

<표 5-15> 관계회사제도 도입 시 모기업의 출자비율에 따른 자회사의 대기업 편입비율

적용기준	시장구분	표본 수	도입 전	도입 후						
				40%	50%	60%	70%	80%	90%	100%
①	증권거래소	867	88.5	89.7	88.9	88.7	88.6	88.6	88.6	88.5
	코스닥시장	221	51.1	56.6	54.8	52.9	52.5	52.0	51.6	51.1
	등록	807	57.7	64.9	63.3	61.7	60.7	60.3	59.6	59.0
	외부감사	2,473	30.6	44.6	43.3	39.9	38.5	37.7	36.8	35.0
	일반	105	3.8	25.7	21.9	17.1	11.4	10.5	8.6	7.6
	합계	4,473	47.1	57.2	55.8	53.4	52.3	51.7	51.0	49.8
①+②	증권거래소	867	95.6	96.1	95.8	95.8	95.7	95.7	95.7	95.6
	코스닥시장	221	74.7	78.3	76.5	75.6	75.6	75.1	75.1	74.7
	등록	807	88.2	91.6	90.7	90.0	89.6	89.5	89.1	88.7
	외부감사	2,473	74.2	83.0	82.0	80.2	79.4	78.8	78.3	77.2
	일반	105	37.1	56.2	52.4	47.6	42.9	41.9	41.0	41.0
	합계	4,473	80.0	86.2	85.3	84.0	83.4	83.0	82.6	81.8
①+②+③	증권거래소	867	96.1	96.3	96.2	96.2	96.1	96.1	96.1	96.1
	코스닥시장	221	75.6	78.3	76.5	76.5	76.5	76.0	76.0	75.6
	등록	807	89.5	91.8	91.1	90.6	90.3	90.2	89.8	89.7
	외부감사	2,473	77.9	83.2	82.3	81.2	80.7	80.2	80.0	79.6
	일반	105	40.0	57.1	55.2	50.5	45.7	44.8	43.8	43.8
	합계	4,473	82.5	86.4	85.6	84.9	84.4	84.1	83.8	83.6

- 기준①: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호 별표1의 기준에 의한 분류
- 기준②: 모기업이 출자총액제한집단에 속하는 경우 자회사를 대기업으로 분류
- 기준③: 자산총액이 5천억 이상인 모기업이 발행주식총수의 30%이상인 자회사는 대기업으로 분류

다. 자회사의 업종별 분석

※ 모기업이 증권선물거래소 상장기업과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인 경우

- 분석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산업간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관계회사제도 효과를 제조업과 비제조업으로 구분하여 실시함
- 기준비율을 40%로 가정하고 기준①을 적용하여 중소기업 여부를 평가한 결과 제조업은 278개 자회사가 추가로 대기업에 편입되고 비제조업의 경우 317개 업체가 추가 편입되어, 업체 수 기준의 관계회사제도 효과는 비제조업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발생
 - 하지만 추가 편입비율은 제조업의 경우 10%(278/2,781)이지만 비제조업은 8%(317/3,973)로 나타나서 제조업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 5-16> 자회사 업종별 관계회사제도 도입 전·후의 대기업 수 비교

적용기준	①						①+②+③						
	제조업			비제조업			제조업			비제조업			
업종	제조업			비제조업			제조업			비제조업			
표본수	2,781			3,973			2,781			3,973			
구분	기업	증가	증감	기업	증가	증감	기업	증가	증감	기업	증가	증감	
도입 전	874			1,643			1,582			2,941			
도입 후	40%	1,152	278		1,960	317		1,740	158		3,086	145	
	50%	1,109	235	Δ43	1,910	267	Δ50	1,706	124	Δ34	3,057	116	Δ29
	60%	1,041	167	Δ68	1,842	199	Δ68	1,673	91	Δ33	3,029	88	Δ28
	70%	1,006	132	Δ35	1,814	171	Δ28	1,653	71	Δ20	3,016	75	Δ13
	80%	991	117	Δ15	1,794	151	Δ20	1,644	62	Δ9	3,002	61	Δ14
	90%	979	105	Δ12	1,771	128	Δ23	1,637	55	Δ7	2,996	55	Δ6
	100%	952	78	Δ27	1,729	86	Δ42	1,627	45	Δ10	2,981	40	Δ15

- 기준①: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호 별표1의 기준에 의한 분류
 - 기준②: 모기업이 출자총액제한집단에 속하는 경우 자회사를 대기업으로 분류
 - 기준③: 자산총액이 5천억 이상인 모기업이 발행주식총수의 30%이상인 자회사는 대기업으로 분류
- 주) 기업은 대기업 수, 증가는 관계회사제도 도입으로 인해 추가로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 수, 증감은 관계회사 적용기준 지분비율의 변화에 따라 추가로 대기업에 편입되는 기업 수를 의미함

-
-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세 가지 중소기업법주관련 법률을 모두 적용하면 업체 수 기준 관계회사제도 효과는 제조업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발생
 - 관계회사제도를 도입하면 제조업의 경우 158개 기업체가 추가로 대기업에 편입되고, 비제조업은 145개 기업체가 추가 편입되는 것으로 분석되어 별표1의 규정만을 적용한 경우와 반대현상이 발생
 - 상반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은 제조업 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나 자산5천억 이상 모기업이 출자한 자회사가 상대적으로 많아서 발생하는 현상
 - 관계회사제도 적용 기업 수를 결정하는 기준비율은 제조업과 비제조업간 제도도입 효과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
 - 기준비율을 현재 미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50%에서 40%로 하향 조정하면 제조업의 경우 34개 업체가 추가로 대기업에 편입되고 비제조업은 29개 업체가 추가 편입되어 업종간 차이는 미미한 수준

※ 모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의 대기업인 경우

□ 경영능력이 대기업 수준에 미달한 모기업의 자회사가 중소기업에서 배제되는 문제점을 줄이고자 법률상 대기업의 자회사를 대상으로 제도효과를 추가 분석을 실시

○ 기준비율 40% 수준에서 별표1만을 적용할 경우 제조업은 216개 기업이 대기업에 추가 편입되지만, 비제조업은 239개 기업체가 추가로 편입되어 업종간 차이가 발생

<표 5-17> 자회사 업종별 관계회사제도 도입 전·후의 대기업 수 비교

적용기준	①				①+②+③				
	제조업		비제조업		제조업		비제조업		
업종	제조업		비제조업		제조업		비제조업		
표본수	1,713		2,760		1,713		2,760		
구분	기업	증가	기업	증가	기업	증가	기업	증가	
도입 전	737		1,369		1,327		2,363		
도입 후	40%	953	216	1,605	236	1,428	101	2,438	75
	50%	924	187	1,572	203	1,408	81	2,423	60
	60%	867	130	1,522	153	1,385	58	2,411	48
	70%	840	103	1,499	130	1,372	45	2,403	40
	80%	826	89	1,487	118	1,364	37	2,396	33
	90%	816	79	1,467	98	1,359	32	2,391	28
	100%	796	59	1,433	64	1,355	28	2,384	21

- 기준①: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호 별표1의 기준에 의한 분류
- 기준②: 모기업이 출자총액제한집단에 속하는 경우 자회사를 대기업으로 분류
- 기준③: 자산총액이 5천억 이상인 모기업이 발행주식총수의 30%이상인 자회사는 대기업으로 분류
- 주) 기업은 대기업 수, 증가는 관계회사제도 도입으로 인해 추가로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 수를 의미함

○ 하지만 세가지 법률을 모두 적용하면 제조업은 101개 자회사가 대기업에 추가 편입되고, 비제조업은 75개 업체가 추가되어 상반되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지만 업종간 차이는 미미한 수준

- 기준비율을 상향 조정하면 중소기업에서 배제되는 기업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기업 수는 10개 미만에 그치고 있어 기준비율을 어느 수준으로 결정하는 가는 제도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낮으며, 이러한 현상으로 업종간에 유사한 행태를 보임

3. 소 결론

- 우리나라의 경우 출자비율이 일정수준을 초과하면 모기업 자원(매출액, 자본금, 근로자 수) 천제를 자회사에 합산하는 방식보다 지분비율 만큼 자산을 합산하는 방식이 대기업을 자회사를 중소기업에서 제외시키는데 상대적으로 높은 효과가 발생
 - 모기업 범주, 업종 및 소속시장에 관계없이 분석결과는 동일하게 나타나서 지분비율 만큼 모기업 자원을 자회사에 합산하는 방식이 우월함을 입증
 - 이 현상은 상당수 자회사가 대기업 수준에 근접한 규모의 자원을 가지고 있고, 모기업이 적은 지분투자자 자회사를 통제하는 국내기업의 특성에 기인

- 관계회사제도의 또 다른 중요 요인인 기준비율 수준은 대기업을 자회사를 중소기업에서 제외시키는데 큰 역할을 수행하지 못함
 - 대기업 자원의 전액합산 방식은 기준비율을 낮출수록 중소기업에서 배제되는 자회사 수가 증가하고 지분 비율에 비례한 합산방식은 기준비율을 높일수록 배제되는 기업 수가 증가하지만 두 방식 모두 기준비율 변동에 따라 추가로 배제되는 기업 수는 크지 않음

- 관계회사제도 효과는 증권거래소나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자회사보다 외부감사기업 이하의 자회사에서 월등히 높게 발생
 -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은 규모가 일정수준에 도달해 있고 모기업이 자신보다 큰 기업이므로 관계회사제도 도입이전에 대다수 기업이 대기업을 이기 때문에 제도효과가 낮을 수 밖에 없지만, 외부감사 이하 기업은 규모가 작아 모기업 규모가 클수록 대기업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아짐

- 모기업 범위를 넓힐(증권선물시장 상장기업과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수록 제도효과가 높아지지만 이는 경영능력이 대기업에 미치지 못하는 모기업의 자회사가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
 -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중에는 경영능력이 부족하고 법률상 중소기업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는데 대기업으로 간주하면 그들의 자회사가 대기업으로 평가되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됨

VI. 중소기업범위 관련 정책제언

1.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나목에 대한 입장

- 중소기업의 소유와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제3조제2호)을 충족하는 기업체는 증권선물거래소 상장기업의 자회사인 7,342개 기업체 중에서 782개에 달하여 제한적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분석(표4-1 참조)
 - 자산기준과 기준 지분비율을 하향 조정을 통해 효과를 높일 수 있는데 전자보다는 후자가 상대적으로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서 제도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 관계회사제도 도입을 가정하면 제도개선의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

<표 6-1> 자산규모와 출자비율 변화에 따른 관계회사 편입비율 분석결과

자산기준	출자비율	표본 수	기초	관계회사 지분비율									
				10 %	20%	30%	40%	50%	60%	70%	80%	90%	100%
3000	30%	4,478	84.3	87.3	89.6	91.8	93.1	94.7	95.9	96.9	97.5	98.0	98.2
4000			83.4	86.6	89.1	91.4	92.8	94.4	95.7	96.7	97.5	97.9	98.2
5000			82.5	85.8	88.5	90.9	92.4	94.1	95.5	96.6	97.3	97.8	98.0
6000			82.0	85.5	88.3	90.7	92.3	94.0	95.4	96.5	97.3	97.8	98.0
7000			81.6	85.2	88.0	90.5	92.2	94.0	95.4	96.5	97.3	97.8	98.0
8000			81.3	85.0	87.8	90.5	92.2	94.0	95.4	96.5	97.3	97.8	98.0
5,000억			10%	82.9	86.1	88.7	91.0	92.5	94.2	95.6	96.6	97.3	97.8
	20%	82.7	86.0	88.6	91.0	92.5	94.1	95.6	96.6	97.3	97.8	98.0	
	30%	82.5	85.8	88.5	90.9	92.4	94.1	95.5	96.6	97.3	97.8	98.0	
	40%	82.3	85.6	88.4	90.9	92.4	94.1	95.5	96.6	97.3	97.8	98.0	
	50%	82.2	85.6	88.3	90.8	92.4	94.1	95.5	96.6	97.3	97.8	98.0	
	60%	81.6	85.3	88.1	90.7	92.3	94.0	95.5	96.5	97.3	97.8	98.0	

- 관계회사제도 도입 시 지분비율을 현재의 30%에서 10%로 조정해도 대기업 자회사가 대기업으로 편입되는 비율은 82.5%에서 82.9%로 증가하는데 그치고 기준 지분비율을 50%로 가정하면 해당비율이 94.1%로 동일해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
- 제도강화는 실익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실제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분류될 위험이 있는 만큼 제도개선보다는 관계회사제도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

2. 중소기업 유예기간제도에 대한 입장

-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진입한 후 유예기간 동안 중소기업으로 회귀하는 기업체는 53.5%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상당수 기업체가 관련제도를 악용하는 것으로 분석됨
- 특히 유예기간 동안에도 대기업에서 이탈하였다가 재차 진입하는 기업체도 있어 유예기간제도를 장기간 동안 악용하는 기업체도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

<표 6-2> 외부감사이상 기업들의 대기업 유지 현황

신규진입		연도별 유지현황						기간별 유지현황		
		2005		2006		2007		1년 후	2년 후	3년 후
연도	대기업	대기업	유지비율	대기업	유지비율	대기업	유지비율			
2004	159	123	77.4	116(8)	73.0	74(8)	46.5	123	116	74
2005	145			107	73.8	83(6)	57.2	107	83	
2006	185					102	55.1	102		
2007	159					159				
소계						418		332	199	74
유지비율								67.9	65.5	46.5

- 괄호()안의 숫자는 신규로 대기업에 진입했다가 탈락한 이후 재차 대기업에 진입한 기업 수를 의미함
- 편의상 <표 4-5>를 재 기술함

- 기업들의 제도악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련제도 폐지와 유예기간 축소 방안을 고려할 수 있지만 회귀기업 중에서 실제로 경영능력의 부족으로 대기업에서 탈락한 기업이 존재할 수 있음
- 이 경우 유예기간제도 혜택에 관계없이 경영에 몰두하는 기업체는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유예기간 폐지는 제도의 악용의지가 있는 기업들이 대기업진입 차체를 억제하며 회계분식을 촉진하는 부작용이 발생
- 유예기간제도는 현재 상태를 유지하되 희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유예기간 이용횟수(2~3회)와 최대활용기간(예를 들어 10년)을 정하여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기업을 중소기업에서 배제하는 정책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

3. 관계회사제도 도입에 대한 입장

- 현재의 중소기업범위와 관련된 제도는 대기업의 자회사가 중소기업시장 참여를 제한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음
 - 중소기업기본법의 양적 기준(별표1)과 질적 기준(자산이 5천억 이상인 모기업의 출자비율이 30%이상, 상호출자제한집단에 속한 기업)을 적용하는 경우 대기업 자회사의 17.5%, 증거거래소와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자회사의 33.0%가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한계가 발생
- 이러한 제도상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계회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관계회사제도 도입방법은 미국과 같이 지분비율이 일정수준(50%)을 초과하면 모기업 자원 전체를 자회사에 합산하는 방식과 지분비율 만큼 모기업 자원을 합산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음
 - 국내 대기업들은 지분비율 0%로 자회사를 지배하는 경우가 60.7%를 차지하고 있어 전자의 방식을 채택하면 적용대상기업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
 - 또한 현행기준은 자산5천억 이상 모기업이 30%이상 지분을 소유한 자회사는 중소기업에서 제외하고 있어 해당기업군이 두 법령에 의해 중복적용을 받아 관계회사제도 효과가 희석됨
 - 후자의 방식은 대상기업 수를 확대시킬 수 있으나 지분비율이 0인 기업은 적용에서 배제되어 모기업의 우회출자를 촉진하는 유인으로 작용
- 두 방식은 서로 상충되는 장단점을 보유하기 때문에 정책의 우선순위에 따라 도입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임
 - 모기업은 유가증권 상장기업이 아니라 법령에 의해 대기업으로 분류된 기업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_ 법령상 중소기업인 상장기업이 모기업에 포함되면 형평성 문제와 실제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오류가 발생

-
- 정책시행의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보수적인 입장이라면 지분비율이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 모기업의 자원 전체를 흡산하는 방식을 채택해야 할 것임
 - 이 경우 기준 지분비율은 미국과 같이 50%로 하기 보다는 30%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임. 현행 기준에서 50%로 하면 자산 5천억 이상인 모기업의 출자비율이 30~49%인 자회사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

 - 대기업 자회사의 적극적인 배제를 추구한다면 지분비율 만큼 모기업 자원을 자회사에 흡산하는 방식이 효과적일 것임
 - 본 방식은 대다수 대기업 자회사를 중소기업에서 배제시키는 장점이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우회출자 등으로 모기업이 0% 지분으로 자회사를 통제하는 기업이 60%를 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보완정책이 필요
 - 대기업의 명백한 관계회사이면서 출자비율이 0%인 자회사에 대해서는 모기업 자원의 일정비율(예; 30%)을 의무적으로 자회사에 흡산

첨부1: 대기업의 업종별 지분비율 기준 자회사 분포(국내법인)

업종코드	업종명	0		1~10		11~20		21~30		31~40		41~50		51~60		61~70		71~80		81~90		91~100	
		구간	누계	구간	누계	구간	누계	구간	누계	구간	누계	구간	누계	구간	누계	구간	누계	구간	누계	구간	누계	구간	누계
A	농업임업	4	4	0	4	0	4	0	4	0	4	0	4	0	4	0	4	0	4	0	4	0	4
B	어업	17	17	0	17	2	19	3	22	2	24	2	26	1	27	1	28	1	29	0	29	2	31
D15	음 식 료	280	280	38	318	23	341	26	367	17	384	36	420	16	436	11	447	6	453	6	459	46	505
D16	담배제조		0	0	0	0	0	0	0	0	0	1	1	1	2	0	2	0	2	0	2	5	7
D17	섬유제품	59	59	3	62	3	65	3	68	0	68	3	71	2	73	4	77	3	80	0	80	13	93
D18	봉제의복	162	162	12	174	3	177	9	186	3	189	9	198	4	202	2	204	3	207	4	211	9	220
D19	가죽가방	47	47	0	47	0	47	1	48	2	50	1	51	1	52	0	52	0	52	1	53	1	54
D20	목재나무	15	15	1	16	0	16	0	16	1	17	2	19	0	19	0	19	0	19	0	19	4	23
D21	펄프종이	81	81	5	86	11	97	15	112	9	121	10	131	4	135	3	138	2	140	4	144	7	151
D22	출판인쇄	188	188	6	194	0	194	4	198	5	203	6	209	2	211	5	216	2	218	1	219	16	235
D23	코 크 스	64	64	2	66	1	67	3	70	1	71	1	72	0	72	0	72	0	72	1	73	2	75
D24	화 합 물	831	831	53	884	34	918	47	965	34	999	63	1062	39	1101	23	1124	15	1139	14	1153	64	1217
D25	고 무	77	77	4	81	5	86	3	89	9	98	7	105	4	109	3	112	5	117	1	118	20	138
D26	비 금 속	124	124	11	135	3	138	11	149	9	158	9	167	9	176	4	180	1	181	3	184	30	214
D27	1차 금속	341	341	13	354	10	364	19	383	13	396	14	410	10	420	6	426	6	432	7	439	28	467
D28	조립금속	51	51	5	56	4	60	5	65	7	72	6	78	12	90	1	91	3	94	3	97	17	114
D29	기타기계	202	202	18	220	9	229	20	249	12	261	15	276	13	289	6	295	6	301	3	304	34	338
D30	컴 퓨 터	26	26	1	27	2	29	4	33	3	36	4	40	9	49	5	54	4	58	1	59	12	71
D31	기타전기	154	154	3	157	4	161	13	174	9	183	11	194	19	213	5	218	6	224	4	228	31	259
D32	전자부품	527	527	39	566	31	597	38	635	38	673	30	703	33	736	22	758	15	773	14	787	84	871
D33	의료정밀	89	89	2	91	2	93	5	98	12	110	7	117	4	121	3	124	3	127	1	128	11	139
D34	자 동 차	230	230	14	244	25	269	21	290	16	306	24	330	9	339	4	343	7	350	6	356	21	377
D35	운송장비	80	80	4	84	2	86	2	88	1	89	0	89	2	91	1	92	0	92	1	93	6	99
D36	가구제조	15	15	1	16	4	20	6	26	1	27	5	32	2	34	0	34	0	34	0	34	12	46
E	전기가스	138	138	4	142	1	143	2	145	2	147	5	152	2	154	1	155	0	155	1	156	17	173
F	건 설 업	267	267	20	287	14	301	12	313	18	331	26	357	18	375	12	387	8	395	3	398	88	486
G	도매소매	784	784	29	813	22	835	30	865	19	884	30	914	26	940	11	951	10	961	9	970	113	1083
H	숙박음식	15	15	0	15	0	15	0	15	0	15	0	15	1	16	0	16	0	16	0	16	0	16
I	운 수 업	134	134	24	158	10	168	12	180	18	198	21	219	20	239	11	250	7	257	9	266	17	283
J	통 신 업	149	149	2	151	5	156	3	159	6	165	4	169	4	173	3	176	1	177	4	181	19	200
K	금융보험	509	509	28	537	11	548	7	555	9	564	5	569	11	580	6	586	5	591	8	599	59	658
L	부 동 산	1	1	2	3	0	3	0	3	0	3	1	4	0	4	0	4	0	4	0	4	0	4
M	사업서비스	929	929	24	953	24	977	36	1013	60	1073	64	1137	58	1195	48	1243	18	1261	12	1273	148	1421
O	교육서비스	78	78	1	79	0	79	0	79	1	80	0	80	2	82	0	82	2	84	0	84	2	86
Q	오락문화	252	252	12	264	8	272	8	280	9	289	7	296	15	311	4	315	4	319	5	324	21	345
R	공공수리	6	6	0	6	0	6	0	6	0	6	1	7	0	7	0	7	1	8	0	8	4	12
	소계	6926	6926	381	7307	273	7580	368	7948	346	8294	430	8724	353	9077	205	9282	144	9426	126	9552	963	10515

첨부2: 대기업의 업종별 지분비율 기준 자회사 분포(해외법인)

업종코드	업종명	0		1~10		11~20		21~30		31~40		41~50		51~60		61~70		71~80		81~90		91~100	
		구간	누적	구간	누적	구간	누적	구간	누적	구간	누적	구간	누적	구간	누적	구간	누적	구간	누적	구간	누적	구간	누적
A01	농업임업	1	1		1		1		1		1		1		1		1		1		1	3	4
B05	어업											6	6		6		6	1	7		7	2	9
D15	음 식 료	110	110	3	113	5	118	2	120	4	124	14	138	4	142	4	146	7	153	10	163	47	210
D16	담배제조																						
D17	섬유제품	7	7		7		7		7		7	1	8		8		8	1	9		9	8	17
D18	봉제의복	258	258	1	259		259	1	260		260	4	264		264		264	1	265	3	268	50	318
D19	가죽가방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9	29
D20	목재나무	1	1		1		1		1		1		1		1		1		1		1	8	9
D21	펄프종이	14	14		14		14		14		14		14		14		14	1	15		15	8	23
D22	출판인쇄	64	64		64		64		64		64		64	1	65	1	66		66		66	7	73
D23	코 크 스	80	80		80		80	2	82	1	83	1	84	1	85		85		85		85	10	95
D24	화 합 물	1,204	1,204	3	1,207	4	1,211	1	1,212	5	1,217	12	1,229	9	1,238	6	1,244	7	1,251	3	1,254	96	1,350
D25	고 무	23	23	1	24		24	2	26	2	28	1	29	1	30		30	1	31	1	32	54	86
D26	비 금 속	39	39	2	41		41	1	42	5	47	10	57	4	61	2	63		63		63	14	77
D27	1차 금속	165	165		165	3	168	2	170	6	176	6	182	9	191	1	192	2	194		194	25	219
D28	조립금속	8	8	1	9	1	10		10		10	4	14	2	16	3	19		19	3	22	21	43
D29	기타기계	69	69	3	72	1	73	1	74	4	78	3	81	4	85	2	87	3	90	4	94	84	178
D30	컴 퓨 터	1	1	1	2	1	3	3	6	2	8	2	10		10		10		10	1	11	23	34
D31	기타전기	61	61		61	1	62	2	64	1	65	2	67	2	69	5	74	1	75	1	76	42	118
D32	전자부품	1,183	1,183	5	1,188	2	1,190	8	1,198	16	1,214	24	1,238	16	1,254	20	1,274	15	1,289	15	1,304	306	1,610
D33	의료정밀	243	243		243		243		243		243	1	244	2	246	4	250		250	1	251	45	296
D34	자 동 차	127	127	3	130	8	138	6	144	12	156	22	178	18	196	6	202	4	206	3	209	94	303
D35	운송장비	278	278	1	279		279	1	280	3	283	5	288	9	297		297	2	299		299	13	312
D36	가구제조	4	4		4		4		4		4	1	5		5		5		5	1	6	10	16
E	전기가스	31	31		31		31		31		31		31	1	32		32	1	33		33	4	37
F	건 설 업	96	96		96	2	98	5	103	2	105	4	109	2	111	3	114	2	116	1	117	36	153
G	도매소매	908	908	5	913	3	916	8	924	7	931	22	953	11	964	5	969	5	974	8	982	128	1,110
H	숙박음식	2	2		2		2		2		2		2		2		2		2		2		2
I	운 수 업	78	78		78	1	79	4	83	6	89	20	109	6	115	6	121	2	123		123	34	157
J	통 신 업	368	368		368		368	1	369		369	1	370	1	371		371		371		371	2	373
K	금융보험	535	535		535		535		535		535	4	539	1	540	2	542	1	543		543	29	572
L	부 동 산																						
M	사업서비스	1,173	1,173	2	1,175	3	1,178	3	1,181	10	1,191	11	1,202	8	1,210	4	1,214	7	1,221	9	1,230	114	1,344
O	교육서비스	245	245		245		245		245		245	2	247		247	2	249		249	1	250	4	254
Q	오락문화	79	79		79		79		79		79	2	81	1	82		82		82	1	83	10	93
R	공공수리																						
소계	소계	7,475	7,475	31	7,506	35	7,541	53	7,594	86	7,680	185	7,865	113	7,978	76	8,054	64	8,118	66	8,184	1,340	9,524

첨부3: 자회사의 소속시장간 관계회사제도 도입 전·후의 대기업 수 비교(1)

시장구분		증권거래소			코스닥시장			등록기업			외부감사기업			일반기업			
표본 수		1,150			407			1,074			3,803			320			
적용기준	구분	대기업	중가	순증	대기업	중가	순증	대기업	중가	순증	대기업	중가	순증	대기업	중가	순증	
①	도입 전	922			135			538			915			7			
	도입 후	10%	989	67		176	41		714	176		1,714	799		27	20	
		20%	1,010	88	21	208	73	32	790	252	76	2,101	1,186	387	37	30	10
		30%	1,028	106	18	230	95	22	828	290	38	2,317	1,402	216	54	47	17
		40%	1,036	114	8	248	113	18	852	314	24	2,464	1,549	147	63	56	9
		50%	1,053	131	17	263	128	15	879	341	27	2,600	1,685	136	79	72	16
		60%	1,061	139	8	277	142	14	892	354	13	2,716	1,801	116	94	87	15
		70%	1,070	148	9	291	156	14	906	368	14	2,824	1,909	108	109	102	15
		80%	1,076	154	6	302	167	11	917	379	11	2,924	2,009	100	118	111	9
		90%	1,082	160	6	314	179	12	933	395	16	2,995	2,080	71	131	124	13
100%	1,087	165	5	321	186	7	950	412	17	3,069	2,154	74	137	130	6		
①+②	도입 전	1,009			206			832			2,305			59			
	도입 후	10%	1,025	16		218	12		857	25		2,481	176		67	8	
		20%	1,034	25	9	234	28	16	883	51	26	2,632	327	151	73	14	6
		30%	1,044	35	10	249	43	15	901	69	18	2,760	455	128	86	27	13
		40%	1,047	38	3	263	57	14	916	84	15	2,840	535	80	91	32	5
		50%	1,061	52	14	276	70	13	932	100	16	2,934	629	94	103	44	12
		60%	1,067	58	6	289	83	13	937	105	5	3,005	700	71	116	57	13
		70%	1,076	67	9	300	94	11	944	112	7	3,079	774	74	127	68	11
		80%	1,081	72	5	310	104	10	952	120	8	3,138	833	59	134	75	7
		90%	1,086	77	5	320	114	10	964	132	12	3,191	886	53	146	87	12
100%	1,091	82	5	327	121	7	974	142	10	3,248	943	57	151	92	5		
①+②+③	도입 전	1,013			208			842			2,398			62			
	도입 후	10%	1,028	15		219	11		864	22		2,534	136		69	7	
		20%	1,037	24	9	235	27	16	889	47	25	2,671	273	137	75	13	6
		30%	1,045	32	8	249	41	14	903	61	14	2,785	387	114	87	25	12
		40%	1,048	35	3	263	55	14	917	75	14	2,852	454	67	92	30	5
		50%	1,062	49	14	276	68	13	933	91	16	2,939	541	87	104	42	12
		60%	1,067	54	5	289	81	13	938	96	5	3,009	611	70	116	54	12
		70%	1,076	63	9	300	92	11	944	102	6	3,082	684	73	127	65	11
		80%	1,081	68	5	310	102	10	952	110	8	3,141	743	59	134	72	7
		90%	1,086	73	5	320	112	10	964	122	12	3,193	795	52	146	84	12
100%	1,091	78	5	327	119	7	974	132	10	3,250	852	57	151	89	5		

첨부4: 자회사의 소속시장간 관계회사제도 도입 전·후의 대기업 수 비교(2)

시장구분		증권거래소			코스닥시장			등록기업			외부감사기업			일반기업			
표본 수		867			221			807			2,473			105			
적용기준	구분	대기업	증가	순증	대기업	증가	순증	대기업	증가	순증	대기업	증가	순증	대기업	증가	순증	
①	도입 전	767			113			466			756			4			
	도입 후	10%	825	58		149	36		640	174		1,489	733		19	15	
		20%	836	69	11	170	57	21	700	234	60	1,790	1,034	301	27	23	8
		30%	849	82	13	185	72	15	733	267	33	1,955	1,199	165	37	33	10
		40%	851	84	2	197	84	12	749	283	16	2,070	1,314	115	43	39	6
		50%	855	88	4	202	89	5	769	303	20	2,158	1,402	88	55	51	12
		60%	858	91	3	205	92	3	776	310	7	2,237	1,481	79	66	62	11
		70%	860	93	2	209	96	4	784	318	8	2,295	1,539	58	77	73	11
		80%	863	96	3	212	99	3	787	321	3	2,356	1,600	61	81	77	4
		90%	864	97	1	214	101	2	790	324	3	2,378	1,622	22	89	85	8
100%	864	97	0	217	104	3	796	330	6	2,391	1,635	13	90	86	1		
①+②	도입 전	829			165			712			1,834			39			
	도입 후	10%	839	10		173	8		736	24		1,982	148		44	5	
		20%	844	15	5	182	17	9	752	40	16	2,083	249	101	48	9	4
		30%	852	23	8	192	27	10	769	57	17	2,170	336	87	55	16	7
		40%	853	24	1	201	36	9	778	66	9	2,230	396	60	57	18	2
		50%	857	28	4	205	40	4	789	77	11	2,284	450	54	66	27	9
		60%	860	31	3	208	43	3	793	81	4	2,330	496	46	76	37	10
		70%	862	33	2	209	44	1	795	83	2	2,355	521	25	80	41	4
		80%	864	35	2	212	47	3	797	85	2	2,391	557	36	86	47	6
		90%	864	35	0	214	49	2	798	86	1	2,404	570	13	93	54	7
100%	864	35	0	217	52	3	799	87	1	2,410	576	6	94	55	1		
①+②+③	도입 전	833			167			722			1,926			42			
	도입 후	10%	842	9		174	7		743	21		2,034	108		46	4	
		20%	847	14	5	183	16	9	758	36	15	2,121	195	87	50	8	4
		30%	853	20	6	192	25	9	771	49	13	2,194	268	73	56	14	6
		40%	854	21	1	201	34	9	779	57	8	2,241	315	47	58	16	2
		50%	858	25	4	205	38	4	790	68	11	2,288	362	47	67	25	9
		60%	860	27	2	208	41	3	794	72	4	2,333	407	45	76	34	9
		70%	862	29	2	210	43	2	796	74	2	2,368	442	35	83	41	7
		80%	864	31	2	212	45	2	797	75	1	2,393	467	25	86	44	3
		90%	864	31	0	214	47	2	798	76	1	2,405	479	12	93	51	7
100%	864	31	0	217	50	3	799	77	1	2,411	485	6	94	52	1		

첨부5: 자회사 소속시장별 관계회사제도 도입 전·후의 대기업 수 비교(3)

시장구분		증권거래소			코스닥시장			등록기업			외부감사기업			일반기업			
표본수		1,150			407			1,074			3,803			320			
적용기준	구분	대기업	증가	증분	대기업	증가	증분	대기업	증가	증분	대기업	증가	증분	대기업	증가	증분	
①	도입 전	922			135			538			915			7			
	도입 후	40%	936	14		148	13		613	75		1,368	453		47	40	
		50%	927	5	Δ9	144	9	Δ4	597	59	Δ16	1,312	397	Δ56	39	32	Δ8
		60%	925	3	Δ2	140	5	Δ4	582	44	Δ15	1,205	290	Δ107	31	24	Δ8
		70%	924	2	Δ1	139	4	Δ1	571	33	Δ11	1,162	247	Δ43	24	17	Δ7
		80%	924	2	0	137	2	Δ2	566	28	Δ5	1,137	222	Δ25	21	14	Δ3
		90%	924	2	0	136	1	Δ1	560	22	Δ6	1,111	196	Δ26	19	12	Δ2
	100%	923	1	Δ1	135	0	Δ1	555	17	Δ5	1,053	138	Δ58	15	8	Δ4	
①+②	도입 전	1,009			206			832			2,305			59			
	도입 후	40%	1,016	7		215	9		875	43		2,615	310		94	35	
		50%	1,012	3	Δ4	211	5	Δ4	865	33	Δ10	2,572	267	Δ43	86	27	Δ8
		60%	1,012	3	0	209	3	Δ2	857	25	Δ8	2,506	201	Δ66	78	19	Δ8
		70%	1,011	2	Δ1	209	3	0	852	20	Δ5	2,478	173	Δ28	72	13	Δ6
		80%	1,011	2	0	207	1	Δ2	849	17	Δ3	2,460	155	Δ18	69	10	Δ3
		90%	1,011	2	0	207	1	0	846	14	Δ3	2,444	139	Δ16	68	9	Δ1
	100%	1,010	1	Δ1	206	0	Δ1	843	11	Δ3	2,404	99	Δ40	66	7	Δ2	
①+②+③	도입 전	1,013			208			842			2,398			62			
	도입 후	40%	1,018	5		215	7		877	35		2,621	223		95	33	
		50%	1,015	2	Δ3	211	3	Δ4	868	26	Δ9	2,580	182	Δ41	89	27	Δ6
		60%	1,015	2	0	211	3	0	862	20	Δ6	2,533	135	Δ47	81	19	Δ8
		70%	1,014	1	Δ1	211	3	0	858	16	Δ4	2,511	113	Δ22	75	13	Δ6
		80%	1,014	1	0	209	1	Δ2	855	13	Δ3	2,496	98	Δ15	72	10	Δ3
		90%	1,014	1	0	209	1	0	852	10	Δ3	2,487	89	Δ9	71	9	Δ1
	100%	1,014	1	0	208	0	Δ1	851	9	Δ1	2,466	68	Δ21	69	7	Δ2	

첨부6: 자회사 소속시장별 관계회사제도 도입 전·후의 대기업 수 비교(4)

시장구분		증권거래소		코스닥시장		등록기업		외부감사		일반기업		
표 본 수		867		221		807		2473		105		
적용기준	구 분	대기업	증가	대기업	증가	대기업	증가	대기업	증가	대기업	증가	
①	도입 전	767		113		466		756		4		
	도입 후	40%	778	11	125	12	524	58	1,104	348	27	23
		50%	771	4	121	8	511	45	1,070	314	23	19
		60%	769	2	117	4	498	32	987	231	18	14
		70%	768	1	116	3	490	24	953	197	12	8
		80%	768	1	115	2	487	21	932	176	11	7
		90%	768	1	114	1	481	15	911	155	9	5
100%	767	0	113	0	476	10	865	109	8	4		
①+②	도입 전	829		165		712		1,834		39		
	도입 후	40%	833	4	173	8	739	27	2,052	218	59	20
		50%	831	2	169	4	732	20	2,028	194	55	16
		60%	831	2	167	2	726	14	1,983	149	50	11
		70%	830	1	167	2	723	11	1,964	130	45	6
		80%	830	1	166	1	722	10	1,949	115	44	5
		90%	830	1	166	1	719	7	1,936	102	43	4
100%	829	0	165	0	716	4	1,908	74	43	4		
①+②+③	도입 전	833		167		722		1,926		42		
	도입 후	40%	835	2	173	6	741	19	2,057	131	60	18
		50%	834	1	169	2	735	13	2,035	109	58	16
		60%	834	1	169	2	731	9	2,009	83	53	11
		70%	833	0	169	2	729	7	1,996	70	48	6
		80%	833	0	168	1	728	6	1,984	58	47	5
		90%	833	0	168	1	725	3	1,978	52	46	4
100%	833	0	167	0	724	2	1,969	43	46	4		